

C2011-4 | 2010. 12.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672-01

# 농식품산업특구 제도의 법제화 방안 및 타당성 연구

김 병 료 연구 위원  
전 익 수 부 연구 위원  
윤 중 열 연구 위원  
민 자 혜 초청 연구 위원  
김 수 석 연구 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 담당

김 병 료	연구 위원	연구 총괄, 3장, 5장 집필
진 익 수	부연구위원	1장, 4장, 5장, 6장 집필
윤 종 열	연구 원	2장 집필
민 자 혜	초청연구원	2장, 4장 집필
김 수 석	연구 위원	3장 집필

## 머 리 말

---

우리 농업의 대내외 여건은 농업분야 부가가치 성장의 정체와 같은 위기적인 요소와 동북아시아 농식품시장의 성장 등 기회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동북아시아 농식품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고 국내 농업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서해안 간척지를 활용해 농식품산업특구를 조성하자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식품산업특구는 농식품산업이라는 산업적 특수성과 입지 정책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결합한 개념으로 기존의 산업단지나 지역특화발전 특구와는 산업적·운영적 측면에서 차별화 되는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산업단지나 지역특화특구의 제도적 기반으로 농식품산업특구를 조성·운영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간 다른 특수목적산업단지들이 개별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것처럼 농식품산업특구도 새로운 법적 근거아래 조성·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농식품산업특구의 개념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도적 기반으로 ‘(가칭)농식품산업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본 연구는 향후 우리 농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식품산업특구의 조성 및 운영에 매우 필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특히, 연구가 수행되는 동안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특구진출기업 및 식품관련 기업·투자기관·정부기관·연구기관 관계자들과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한 것은 본 연구에 매우 유익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 농식품산업특구 관련 정책수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바쁜 중에도 포럼의 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농식품산업특구 관련 정책 및 관련 특별법 제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201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 요 약

---

본 연구는 농식품산업특구가 무엇이며, 농식품산업분야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어떤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산업특구는 농식품산업이라는 산업적 특수성과 산업입지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결합한 개념으로서, 농식품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도입한 특별지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외 산업입지 정책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 국내 산업입지 정책의 대표적인 형태인 산업단지 운영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산업과 관련성이 적다. 그 중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공단지는 지역적 연관성은 있으나 기계류 제조업, 석유화학 분야 등이 대부분이라 산업적 연관성은 약하다.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도적 근거로 하되, 특수목적단지들은 개별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로 삼고 있다.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농식품산업특구는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달리 제조업 중심이 아닌 농식품산업 중심이라는 점과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달리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농식품산업특구는 국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을 위한 새로운 산업화 모델 구축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북아 농식품시장의 기회 활용 측면에서, 또한 국제 곡물 수급 불안에 따른 식량안보 대비 측면에서 필요하다.

농식품산업특구의 유형으로는 간척지 중심의 집적형과 품목별 주산단지를 연결한 벨트형, 자연자원 중심의 자원관리형 특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특구 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계획적인 조성이 더 용이한 간척지형 중심의 집적형 농식품산업특구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적형 농식품

산업특구는 서해안 지역의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북아 농식품시장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대규모 복합영농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1차·2차·3차 산업을 융·복합한 컨버전스 농업을 실현하며, 저탄소 생태환경시스템을 이용하는 녹색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 2,000ha 면적을 기준으로 농식품산업특구 조성에 투입되는 비용을 근거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유발효과를 계측하였다. 또한, 특구에 진출하는 기업(첨단유리온실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에 따른 수익성 분석과 시너지 효과 분석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성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4조 4,732억 원 수준으로 사업비 대비 4.3배 수준이며, 고용효과는 전산업분야에 걸쳐 29,461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계측된다. 농식품산업특구에 진출하는 첨단유리온실 진출기업에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육성할 경우 농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부문이나 첨단유리온실의 국산화 및 전문인력 양성, 생산 유발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식품산업특구를 보다 실효성 있게 조성·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근거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보다는 새로운 특별법(“(가칭)농식품산업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별법 제정은 그간 특수목적 단지들이 개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로 삼았던 사례들과 비슷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이러한 특별법에는 농식품산업특구의 조성, 특구의 관리 및 운영, 특구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농식품산업특구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특구종합계획수립, 특구지정 및 특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농식품산업특구의 관리 및 운영 부문에서는 관리기관 설립,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농식품산업특구 육성을 위한 지원 부문에서는 특구 육성을 위한 조성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 관련 법안들에 대한 특례 및 인허가 등의 의제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명시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bout the ‘agro-food special zone’: what it is, why the special zone is needed in the field of agro-food business, and what contents are included in a new special law as institutional foundation

The agro-food special zone is a concept that combines the industrial uniqueness and locational specificity of the agro-food business. It is a special industrial complex introduce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agro-food industry.

In this study, we examined, first, the operational status of government policies on industrial spatial development at home and abroad, and then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general ‘industrial complexes,’ which are one of the most typical forms of industrial spatial development in Korea. We also reviewed the current situation of ‘specialized regional development zones’ administered by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carrying out specialized projects to revive the local economy.

Comparable to the agro-food special zone, the ‘industrial complexes’ are mostly based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are, therefore, not so closely related to the agro-food business. Located in rural areas, the ‘agricultural complexes,’ to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having very weak connections with agro-food business, while the machine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are main businesses in the agricultural complexes.

In the meantime, specialized regional development zones are designated and operated by mostly local governments with their legal basis founded on separate statutes overseeing the regional development of special zones.

The uniqueness of the special agro-food zone is that it is centered around agro-food businesses rather than the manufacturing industry of existing in-

dustrial complexes and that, unlike the specialized regional development zone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it is supervi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need for agro-food special zones arises in three aspects: first, to find a new engine of growth to counter the weakening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agro-food industry and build a new model for industrial development; second, to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in Northeast Asian agro-food markets; and third, to cope with the supply-demand imbalance of world grains and secure food security.

There are three types of agro-food special zones: the 'integration-type' located mostly on reclaimed land, the 'belt-type' linking major agricultural production areas, and the 'resource management-type' focused on managing natural resources. A construction model is suggested for the integration-type special zone since it is relatively easier to develop based on planning with an economic feasibility study.

The Northeast Asian agro-food market has been growing continuously and the 'integration-type' is expected to act as a regional hub through efficient use of reclaimed land in the western coastal regions of Korea. To achieve such a goal, a strategic direction is made; that is, build a global production base that achieves the scale of economy through large-scale combined farming; develop a convergence economy that combines the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and build a foundation for green growth using the low-carbon eco-environment system.

An economic feasibility study was performed to measure the direct, indirect and induced effects of an agro-food special zone built on a land mass of 2,000 hectare. Also, a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rofitability and synergy effects of assisting a company that would do a horticulture business in the special zone with high-tech green houses made of glasses. According to the study, the economic effect is estimated to surpass 14 trillion won(14.4732 trillion



won), which is 4.3 times larger than the estimated project cost, and create 29,461 new jobs across all fields.

If investment is made to support the company doing a business with high-tech glass green houses, it can contribute improv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replacing the import of high-tech glass green houses, fostering experts, stimulating production and creating jobs.

It is better to legislate a special law and make it as institutional basis for constructing and managing agro-food special zones than to utilize current laws made for industrial complexes development because the laws do not properly reflect the uniqueness of agro-food business. Moreover, in the sense of laws related to special industrial complexes, it is consistent with precedents to legislate a new special law for agro-food special zones because special industrial zones have legal foundation with their own specialized laws.

As for the contents of the law, the special law should include guidelines on construction, management, and promotion of agro-food special zones in addition to the general principles covering the purpose of the law and related terms.

The special law should also clearly stipulate contents related to setting up of a master plan and designa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gro-food special zones, including contents related to setting up of a supervising organization and a basic management plan. The law should cover contents related to assisting the special zone developer and companies that wish to move into an agro-food special zone, as well as contents related to exceptions, approvals and authorization.



## 차 례

---

###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 2. 선행 연구 검토 ..... 3
- 3. 연구 내용과 방법 ..... 6

### 제2장 국내외 산업입지정책 현황

- 1. 국내 산업입지정책 현황 ..... 8
- 2. 외국의 산업입지정책 사례 ..... 18

### 제3장 농식품산업특구의 개념과 필요성

- 1. 농식품산업특구의 개념 및 유형 ..... 27
- 2. 농식품산업특구의 필요성 ..... 34
- 3. 농식품산업특구의 추진 방향 ..... 40

### 제4장 농식품산업특구의 경제성 분석

- 1. 농식품산업특구의 기본 모델 ..... 43
- 2. 특구조성 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 45
- 3. 농식품산업특구 진출기업의 경제성 분석 ..... 50

### 제5장 농식품산업특구 제도의 법제화 방안

- 1. 농식품산업특구 제도의 법제화 배경 ..... 63
- 2. 농식품산업특구 제도의 법제화 기본내용 ..... 68
- 3. 향후 과제 ..... 75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77  
2. 결론 ..... 79

**부록**

1.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유형별 지정현황 ..... 81  
2.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사례 ..... 85  
3. 산업단지개발 지원제도 ..... 88  
4. 유관법률 현황 ..... 94  
5. 유관법률의 특례, 인·허가 및 지원 조항 비교 ..... 97  
6. 『농식품산업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112

**참고 문헌** ..... 147

## 표 차례

---

### 제2장

표 2- 1. 산업특구 지정 현황 .....	9
표 2- 2. 산업단지의 유형 .....	10
표 2- 3. 연도별 특구지정 실적 .....	11
표 2- 4. 지역특구의 지역별·유형별 현황 .....	12
표 2- 5. 특구별 투자재원 현황 .....	13
표 2- 6. 산업입지 관련 법체계 .....	15
표 2- 7. 산업입지정책의 시기별 주요 내용 .....	17
표 2- 8. 각국의 산업 클러스터 발전 추이 .....	19
표 2- 9. 두바이의 4無2多Competitive 정책 .....	24
표 2-10. 외국의 경제특구 특징 비교 .....	26

### 제3장

표 3- 1. 농식품산업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와의 차이점 .....	29
표 3- 2. 농식품산업 특구의 유형별 구분 .....	30
표 3- 3. 농식품산업화지구 관련 사업 현황 .....	30
표 3- 4. 요소별 생산성 추이 .....	36
표 3- 5. 주요국의 농식품시장 규모 .....	36
표 3- 6. 간척지 현황 .....	38
표 3- 7.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자급률 .....	39
표 3- 8. 필요농지 면적 추정 .....	40

### 제4장

표 4- 1. 농식품산업특구 모델 사업비 추정 .....	46
---------------------------------	----

표 4-2.	농식품산업특구 조성의 경제적 파급효과 .....	49
표 4-3.	첨단시설원예사업의 특성 및 기회요인 .....	51
표 4-4.	국내 첨단시설원예의 지원조건 변화 및 면적 추이 .....	53
표 4-5.	일본 시설원예 대표적 지원사례 .....	54
표 4-6.	네덜란드의 시설원예사업 관련 지원 .....	55
표 4-7.	투자항목별 초기 투자액 .....	56
표 4-8.	시나리오별 투자액 .....	57
표 4-9.	시나리오별 자금조달 기준 .....	58

## 제5장

표 5-1.	특수목적 단지와 근거법률 .....	65
--------	---------------------	----

## 그림 차례

---

### 제2장

- 그림 2-1. 나파밸리 와인클러스터의 구성요소 ..... 20  
 그림 2-2. 일본의 식료산업클러스터 사례 ..... 22

### 제3장

- 그림 3-1. 집적형 지구의 개념도 ..... 31  
 그림 3-2. 벨트형 지구의 개념도 ..... 32  
 그림 3-3. 자원관리형 지구의 개념도 ..... 34  
 그림 3-4. 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 ..... 35  
 그림 3-5. 동북아 주요국 중산층 현황 ..... 37

### 제4장

- 그림 4-1. 집적형 농식품산업특구 구성도 ..... 44  
 그림 4-2. 집적형 농식품산업특구 시설관계도 ..... 45  
 그림 4-3. 일본의 토마토/파프리카 가격 추이 ..... 52  
 그림 4-4. 시설원예 투자비 비교 ..... 53  
 그림 4-5.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 ..... 59

## 부표 차례

---

### 부록 2

부표 2-1.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법에 의한 주요 규제특례 .....	87
---------------------------------------	----

### 부록 3

부표 3-1. 지원대상 및 비용보조율 .....	89
부표 3-2. 토지개발에 따른 지원장치 .....	91
부표 3-3. 산업단지지원 관련 조세제도 .....	92
부표 3-4. 국비보조 교부조건 .....	93

## 부도 차례

---

### 부록 3

부도 3-1. 산업단지 지원제도 .....	88
-------------------------	----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 1.1. 연구 배경

- 농림어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대로 매우 낮고, 부가가치의 성장 및 농가의 소득도 정체되어 있음.
- 농업을 둘러싼 대외 개방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무역적자 증가로 대외교역 조건은 악화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농업·농촌의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뒤떨어짐.
  - 이러한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토지, 노동, 자본, 기술(연구 개발)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뿐만 아니라 시장 조건 등을 활용하는 전략적인 접근도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함(김병률 외, 2009).
  - 우리 농업의 경쟁력 수준은 52.8/100점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의 약 절반 정도에 그침.
- 그러나 세계 농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특히 지리·문화적으로 근접한 동북아시아 지역이 거대 농식품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세계 농식품시장 규모는 4조 3,890억 달러(data monitor, '08년 기준)로

자동차시장(1.6조 달러), IT시장(2.8조 달러)보다 큰 규모

- 이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 수출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은 이미 규모화되고 집적화된 농식품 수출 전략기지를 집중 육성
    - \* 네덜란드(Agriport A7, Food valley) 등
- 특히, 한류 및 한식 세계화 정책으로 인해 차별화된 우리의 농식품 수요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략적 접근이 더욱 필요함.
-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개별적인 규모화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틀 안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사전 계획적이고, 집적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 불가피
- 기존 농식품산업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획기적인 지역·공간 개념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됨.
  - 기존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특구 제도는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업 육성 및 진흥 차원의 접근 필요
  - 더욱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공간 배치 및 규모화가 용이한 간척지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전략적 활용 방안 강구 필요
  - 2009년말 기준, 활용이 가능한 간척지는 11천ha(여의도 37배)로 2012년 이후 매년 2천~3천ha에 달하는 간척농지가 준공되어 2020년까지 활용가능한 간척지는 3만 394ha(여의도의 103배)에 달할 전망
- 그러므로 첨단·부가가치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모델 정립 및 확산을 위해 지구단위 종합지원제도인 ‘특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그 개념·유형·형태에 대한 구체적 검토 필요
- 또한, 이러한 농식품산업특구의 육성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함.
  - 농식품산업특구는 기존의 법적 제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법)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와는 산업적 특수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농식품산업특구의 지정·개발·관리·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 필요

- 그러나 이러한 농식품산업특구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유형 및 형태에 대한 연구가 없었으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도 없었음.
- 또한, 산업법과 같은 기존의 산업입지 관련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이 ‘가칭)농식품산업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농식품산업특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된 바가 없었음.

## 1.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농식품산업특구가 무엇이며, 농식품산업 분야에 농식품산업특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농식품산업특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어떠한지 밝혀는 데 목적을 둔.
  - 특히, 농식품산업특구의 조성과 운영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

## 2. 선행 연구 검토

-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김정호·박문호·김태연(2004), 안병일(2010) 등이 있음.
  - 김정호·박문호·김태연(2004)은 농식품산업과 관련한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선행연구로서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방향에서 농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이론의 체계화 및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또한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해외 사례도 심층적으로 분석
  - 안병일(2010)은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방향에서 지역농업 클러스터가 원료 조달과 공급이라는 일차적인 연계를 넘어서 인프라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

- 농식품산업특구와 정책적 지향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정대철(2010), 박형서(2006) 등의 연구가 있음.
  - 정대철(2010)은 현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제시
  - 박형서(2006)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방향’에서 급변하는 시장 변화를 기회로 삼아, 동북아 물류 거점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시행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과 성공전략을 제시
- 간척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오내원 외(2008), 신용광 외(2008), 박석두 외(2009) 등의 연구가 있음.
  - 오내원 외(2008)는 새만금 간척지의 활용 계획이 농업지역 뿐만 아니라 산업, 관광, 도시, 에너지 단지, 환경용지 등을 다목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용지로 배정된 30%(8,570ha)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방안을 제시하였음. 농업용지의 기능을 농업생산, 농촌관광, 지원 기능으로 분류함. 농업생산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복합곡물단지, 유기농업단지, 원예단지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농촌관광을 위해서는 농업테마파크를 지정하고, 지원 기능을 수행할 요소로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농촌마을 등을 배치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 신용광 외(2008)는 화옹간척지를 사례로 밭토양 조성 방법과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을 고려한 영농 단지 개발의 기본 방향을 검토하였음. 그 결과, 화옹간척지에는 과수단지가 가장 적합하고, 그 다음으로 시설채소 및 시설화훼 수출단지가 우선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함. 또한, 밭작물 재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정책, 식량자급, 수입대체 목표 등을 기준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농가소득 및 수입대체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였음.
  - 박석두 외(2009)는 간척지의 농업적 활용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제시하고, 화옹, 시화, 석문, 이원, 남포, 삼산, 고흥, 군내, 보전, 영산강, 새만금 등

11개 간척지의 지구별 입지여건과 지역의 농업현황 등을 토대로 용도별 단지면적 설정 등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함. 간척지의 기본 용도로는 침단 수출원예단지, 일반원예단지, 친환경축산단지, 지원시설단지, 관광농업단지, 복합곡물단지, 생태환경단지, 비농업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단지별 작물 구성 및 면적 설정, 필요시설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 작물 선정 시에는 간척지 토양의 염분 농도 등을 고려한 작물의 기술적 가능성과 수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였음. 또한, 농업적 활용을 위한 향후 전략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염두에 둔 특화품목 중심의 농산업클러스터 발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획 추진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관리기구 설치를 통한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음. 간척지 토지 임대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규모 수도작 중심의 분양 방식에서 탈피하여 농업법인에 대규모로 임대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음.

- 그 외에 이동필 외(2009)의 ‘경제·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농어촌경제 활성화 사례 분석을 통해 다수가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간적·내용적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음을 제시함.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기존의 분산투자 방식을 극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것을 제안함. 특히,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의 경우 인접 시·군과 연대 및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함.
- 지식경제부(2008)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연례보고서’에서는 지방정부가 추진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는 규제특례 혜택만 부여하는 지역특화사업의 특성 및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규제특례 및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특구사업이 농식품산업특구로 기능하기에는 산업진흥 측면과 지역적 특성에 따른 한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지역특구사업의 수익성 증대 측면은 향후 농식품산업특구의 전망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음.

### 3. 연구 내용과 방법

#### 3.1.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농식품산업특구 제도의 타당성 및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특구 관련 기본 현황,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경제성 분석,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우선 특구·단지·클러스터 등 국내외 산업입지정책 운영 현황을 조사함.
  - 구체적으로 국외 농식품 관련 특구 도입 현황 및 적용 사례를 파악하고, 국내 농식품분야 외 타 분야의 특구 제도 및 정책 운영 현황을 분석함.
- 기존의 산업입지정책과 구별되는 농식품산업특구 정책의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 농식품산업특구의 개념 및 유형별 특징을 살펴봄.
- 농식품산업특구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농식품산업특구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특구 진출기업의 경제성을 분석함.
  - 농식품산업특구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농식품산업특구의 기본 모델을 제시하고, 이런 모델의 특구를 조성할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함.
  - 또한, 농식품산업특구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제성 분석도 사례분석 차원에서 제시함.
- 끝으로, 농식품산업특구 제도의 법제화 방안으로 농식품특구제도(법률)의 기본내용과 향후 추진 방안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하고, 법안의 초안을 제시하며, 시범사업 추진 등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3.2. 연구 방법

-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함.
  - 산업특구 관련 연구 및 사례에 대한 문헌 고찰
  -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 분석을 위한 지역산업연관분석
  - 진출기업의 경제성 분석(사례조사 적용)
  - 전문가 협의회 및 외부 자문단 활용
- 특히, 본 연구는 법제화 타당성 및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만큼, 여러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입지정책 전문가, 농업인 단체, 진출기업, 투자자, 정부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포럼을 설립하여 운영함.
- 또한, 세부 법안 내용에 대한 법률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도 활용함.
- 농식품산업특구 조성의 타당성 분석 및 향후 운영방안 검토를 위해 특구 조성의 경제성 분석과 진출기업의 수익성 분석을 실시함.
  - 특구조성의 경제성 분석의 경우 산업연관모형(Input-Output Analysis)을 이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효과 계측
  - 지원의 범위에 따른 진출기업의 수익성 변동을 시나리오 별로 제시하여 진출기업의 수익성 분석

## 제 2 장

### 국내외 산업입지정책 현황

#### 1. 국내 산업입지정책 현황

##### 1.1. 국내 산업단지 운영 현황

- 산업입지는 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산업단지와 같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계획입지와 기업이 스스로 공장 건설 등에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는 개별입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단지는 개발 주체와 조성 목적을 기준으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유형을 구분함.
  - 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도 가능),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 주체임.
  - 2009년 말 기준 전국산업단지 815개 중 국가산업단지는 40개, 일반산업단지는 368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6개, 농공단지는 401개임.
- 그 외에 공업지역,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단지형),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음.
- 그러나 기존의 산업단지는 ‘제조업(2차산업)’ 중심으로 농산업과는 직접적 연관성



이 매우 적고, 그 중 농공단지는 지역적 연관성에 한정

-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산업단지로 농식품산업과는 지역적 연관성은 있으나, 산업적 연관성은 높지 않음.
- 2008년 3월 전국 363개 농공단지에 총 5,283개의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업종별로는 기계류 제조업이 15.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그다음으로는 음식료(13.6%), 석유화학(13.3%), 기타(13.3%), 전기전자(10.7%) 순

‘산업단지’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

표 2-1. 산업특구 지정 현황

년도	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1994.12	436	32	122	-	282
1995.12	460	32	137	-	291
1996.12	455	32	138	-	285
1997.12	476	35	149	-	292
1998.12	483	36	153	-	294
1999.12	490	36	158	-	296
2000.12	493	36	162	-	295
2001.12	499	37	162	-	300
2002.12	511	38	167	-	306
2003.12	541	38	185	-	318
2004.12	561	35	197	-	329
2005.12	587	35	212	-	340
2006.12	607	35	227	-	345
2007.12	646	35	250	3	358
2008.12	742	35	316	6	385
2009.12	815	40	368	6	401

자료: 2009 전국산업단지 통계.

표 2-2. 산업단지의 유형

구분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업 지역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 무역지역	경제 자유구역
지정 목적	국가기간 및 첨단과학 기술산업 육성	산업의 지방분산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농어민 소득증대	공장의 집단설치를 통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	중소기업의 근대화 및 협동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진흥도모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	외국인투 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
지정 권한	국도해양 부 장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지식경제 부 장관	지식경제 부 장관
대상 지역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기간산업, 첨단산업 입지로 양호한 지역	시·도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양호한 도시지역	시·군내에서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의 집산화와 시설공동화 등 협동화 사업을 위한 지역	산업단지 및 외국 투자자가 투자할 희망하는 지역	화물처리 능력, 사회간접자본시설, 통제시설 등이 충분하거나 예정된 지역	외국인유치 및 정주가능성이 높은 지역

자료: 산업입지연구소(2009).

## 1.2. 지역특구 운영 현황

### 1.2.1. 운영 현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는 2009년 12월 현재 총 10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29개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 2004년 12월에 6개 특구를 최초 지정한 후 2005년 34개, 2006년 31개, 2007년 25개를 지정하였고, 2005년에 지정된 1개 특구는 2007년 9월에 지정해제됨.
  - 2008년에는 22개 특구, 2009년에는 11개 특구를 신규 지정함.
- 지역특산물과 관련한 향토자원진흥(53개), 관광·레포츠(32개), 교육(18개), 산업·연구(13개), 유통·물류(9개), 의료·복지(4개) 분야 등이 지역특구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표 2-3. 연도별 특구지정 실적

지정년도	계	향토자원 진흥	유통·물류	관광· 레포츠	산업·연구	의료·복지	교육
2004	6	1	1	2	1	-	1
2005	34	12	5	7	3	2	5
2006	31	16	3	5	3	1	3
2007	25	11	-	5	5	-	4
2008	22	7	-	9	1	1	4
2009	11	6	-	4	-	-	1
계	129	53	9	32	13	4	18

자료: 지식경제부(2009) 「지역특화발전특구 연례보고서」.

- 지역별로는 2009년 10월 현재 경북(24개), 전남(21), 충북(14개), 전북(12개), 경남(11개) 등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특구제도 활용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3개의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3개 지방자치단체, 2개의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22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전남(8), 경북·충북(4), 전북(3), 충남·경남(2), 대구·강원(1) 등 전국에 분포함.

- 논산시, 여주시 및 부안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3개 특구를 운영 중이며, 고창군, 장흥군, 영동군 등 22개 지방자치단체는 2개 특구를 운영

표 2-4. 지역특구의 지역별·유형별 현황('09.12월 현재)

유형별 지역별	계	향토자원 진흥	관광· 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유통·물류	의료·복지
계 (101)*	129	53	32	18	13	9	4
서울( 4)	4		1	2		1	
부산( 3)	3	1	2				
대구( 2)	3				2	1	
인천( 3)	3	1	1	1			
울산( 2)	2	1	1				
경기( 8)	8	3	3	1	1		
강원( 7)	8	1	3		3		1
충북(10)	14	8	4		1	1	
충남(11)	14	8	1	3	1	1	
전북( 8)	12	4	2		2	1	3
전남(12)	21	8	7	6			
경북(20)	24	13	4	2	1	4	
경남( 9)	11	4	2	3	2		
제주( 2)	2	1	1				

주: ( )\*안은 특구관할 지자체 수.

자료: 지식경제부(2009) 「지역특화발전특구 연례보고서」.

## 1.2.2. 특징

○ 특구지정 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임.

- 초기 많은 수의 특구는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새로운 특구 지정에는 준비 시간이 소요되며, 신규 지정 외에 기존 특구의 운영내실화에도 상당규모

- 의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임.
- 특화사업의 내용이 제도 도입 초기의 1차산업 중심에서 최근 2차, 3차 산업으로 확대 또는 융합 발전해 가는 추세임.
  - 제도 도입 초기에는 지역특산물과 관련한 향토자원진흥 특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정되었으나, 점차 관광·레포츠 및 산업·R&D 관련 특구도 많이 지정됨.
    - 초기에 특구지정이 많았던 향토자원분야는 주로 지역특산물의 생산기반 확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에 중점을 둠.
    - 제도가 정착·발전되면서는 에너지 등 SOC 분야, 조선산업 등 산업분야, 테마형 관광 등 특화사업 분야가 다양해지고 민자유치 규모도 확대됨.
    - 웰빙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의 변화 및 건전한 여가활용에 대한 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민자 유치 노력 등의 최근 경향을 반영
  - 특화사업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서는 국비·지방비·민자(농가 자부담 포함) 등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상당수의 특구에서 국비·지방비·민자 재원을 모두 투입함.
    - 국비·지방비·민자가 모두 투입되는 특구는 81개로 전체 129개 특구 중 63% 차지
    - 국비와 지방비만으로 추진되는 특구는 25개로 전체의 20% 차지하고, 지방비 중심으로 추진되는 특구 9개 중 교육관련 특구가 8개에 해당
    - 민자유치만으로 추진되는 특구는 7개에 불과하지만, 규모 면에서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건설사업임.

표 2-5. 특구별 투자재원 현황

구 분	국비+지방비+민자	국비+지방비	지방비+민자	지방비 중심	민자 중심
특구 수	81개	26개	4	9	7
비 중	63%	20%	3%	7%	6%
예 시	-순창장류산업 -고창복분자산업 -괴산청정고추산업 -부여양송이	-원주 첨단의료산업 -의성마늘산업유통 -부안신재생에너지산업	-원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홍천리더스 카운티특구	-순천 국제화교육 -창녕 외국어교육 -군포청소년교육 -김해평생교육	-여수 오션리조트 -고성 조선산업 -태안종합에너지 -제천에코세라피

자료: 지식경제부(2009). 「지역특화발전특구 연례보고서」.

### 1.3. 국내 산업입지 관련 제도<sup>1</sup>

#### 1.3.1. 산업입지 관련 법률 체계

- 국내 산업입지 관련 법률들이 산업입지정책(industrial loaction policy)의 제도적 근거를 제공함.
  - 산업입지정책은 유한한 국토공간의 토지 이용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정책 (산업입지연구소, 2009)
- 산업입지와 관련된 국내 법령 체계는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구체적인 관련 개별법으로 구성됨.
  - 우리나라의 토지 이용 및 관련법령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고, 각 부처에서 약 89개의 법률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산업입지에 관련 제도는 계획입지의 지정과 개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의 관리와 개별 입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기초함.
  - 특수 목적의 단지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과학기술기초법」에 의한 과학연구단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등이 있음.

<sup>1</sup> 산업입지연구소(2009)의 산업입지관련제도 부문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연례보고서 (2009)에서 발췌 정리

표 2-6. 산업입지 관련 법체계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공급계획산업단지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화단지
과학기술기본법	과학연구단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정보화 촉진기본법	정보통신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자료: 산업입지연구소(2009).

-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구상하고 중앙 정부(국가)가 각 특구에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있음.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 중 하나로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를 참고하여 마련한 제도로 2004년 3월에 공포되고, 9월부터 시행함.

### 1.3.2. 시대별 산업입지정책 및 산업단지 관련 법률의 변화

- 국내 산업입지정책은 정책기조에 따라 변화되어 왔음.
  - 1960년대에는 수출위주의 경공업입지 조성을 위해 계획입지 개발 시도
  - 1970년대에는 수도권에 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 1980년대에는 지역적 불균형 심화로 산업단지를 내실화하며 농공단지 개발 추진
  - 1990년대에는 첨단산업 입지 수요가 증가해 입지유형을 다양화하고 입지규제를 완화했으며 개별입지 증대에 따른 구조조정도 촉진함.
  - 2000년대에는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해 지식기반산업입지를 공급하고, 산업단지클러스터사업 등을 추진해 기존 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산업단지관련 법률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공단개발과 관련된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나 1991년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2003년 7월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
  - 지방공업개발법(1970),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1983)<sup>2</sup>을 통합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신규 제정

<sup>2</sup>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통합됨에 따라 별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1990년에 새로 제정됨.



- 공업배치법(1977)과 공업단지관리법(1975)을 통합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신규 제정

표 2-7. 산업입지정책의 시기별 주요 내용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정책 대상	-계획입지 개발 시도	-수도권내 산업집중	-지역적 불균형 심화	-개발입지 증대 -첨단산업 입지 수요공급	-지식기반 산업입지공급 -기존단지의 경쟁력 제고
정책 기조	-수출위주의 경공업 입지	-수도권 억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내실화 -농공단지 개발	-입지유형 다양화 -입지구제 완화 -구조조정 촉진	-전문화된 접적지구 -지식기반 경제구축지원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추진
관련 법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 조성법 -기계공업 진흥법 -조선공업 진흥법 -전자공업공업진흥법	-지방공업 개발법 -국토이용 관리법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공업단지 관리법 -공업배치법 -환경보전법	-수도권정비 계획법 -중소기업 진흥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공업발전법	-산업입지법 -공업배치법 -국토이용 관리법개정 -산업기술단지 지원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정보화촉진법	-산업법 개정 -산집법 개정 -문화산업 진흥법 -국토계획 및 이용법
산업 구조	-경공업 우선정책 -섬유, 합판, 전기제품, 신발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석유화학, 철강, 선박, 자동차, 기계	-기술집약적 산업수출 산업화 -반도체, 전자공업, 자동차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반도체, 정밀화학, 자동화프로그램 개발	-지식집약적 산업, 미래산업의 성장 -정보통신산업, 게임산업, 생명산업
비고	-울산공업 센터 조성 -수출산업 단지 조성	-지방공업 개발장려지구 -동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수출자유지역개발	-서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개발 -아파트형 공장조성	-산업단지 명칭 변경 -개발절차 간소화 -개별입지 증대 -테크노파크 조성	-도시첨단 산업단지 -문화산업 단지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클러스터 시범단지

자료: 산업입지연구소(2009).

## 2. 외국의 산업입지정책 사례

### 2.1. 산업클러스터

#### 2.1.1. 외국의 산업클러스터 동향

- 1990년대 중반 OECD에서 각국의 산업 클러스터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클러스터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후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OECD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 클러스터의 최근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sup>3</sup>.
  - OECD는 클러스터 연구를 위한 그룹(Cluster Focus Group)을 결성하고 보고서(Boosting Innovation, 1999; Innovative Cluster, 2001)를 발표
  - 미국은 하버드 대학의 포터(M. Porter) 교수를 연구 책임자로 하여 40개 산업 클러스터의 지도화와 실천계획을 작성하는 ‘클러스터 지도제작 프로젝트(Cluster Mapping Project)를 추진
  - 영국은 혁신 클러스터의 정책추진 그룹(Cluster Policy Steering Group)을 결성하여 클러스터의 지도화(Cluster Mapping) 및 정책 개발을 추진
  - 일본은 2000년부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목표로 ‘산업 클러스터계획’을 시행 중이며, 전국 19개 프로젝트에 3,400개 기업과 18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 북유럽의 핀란드는 8개 산업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클러스터 정책을 시행 중이며, 스웨덴은 시스터 사이언스파크(Kista Science Park)를 중심으로 세계 제2의 IT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음.
  - 아시아는 중국이 중관촌 클러스터를 추진 중이며, 대만은 신쥬 클러스터,

<sup>3</sup> 복득규 외(2002).

싱가폴은 IT2000 클러스터, 말레이시아는 MSC 클러스터 등을 추진중임.

표 2-8. 각국의 산업 클러스터 발전 추이

구 분	1960년대 이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후	
산업 클러스터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리콘밸리</li> <li>◦ Route 128 (보스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꾸바(일)</li> <li>◦ 캠브리지(영)</li> <li>◦ 소피아앙티폴리(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주(대만)</li> <li>◦ 구마모토(일)</li> <li>◦ 시스타(스웨덴)</li> <li>◦ 울루(핀란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둥/중관촌(중)</li> <li>◦ MSC(말련)</li> <li>◦ IT2000(싱)</li> </ul>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공업단지</li> <li>◦ 수출자유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덕연구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산업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덕밸리</li> <li>◦ 테크노파크</li> </ul>
정책의 중심	공업단지	과학연구단지	테크노폴리스 (첨단기술단지)	산업클러스터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산업클러스터의 국내외 사례와 발전전략”, 『CEO Information』, 2002,11.

## 2.1.2. 외국의 농업분야 클러스터 사례<sup>4</sup>

### 1)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클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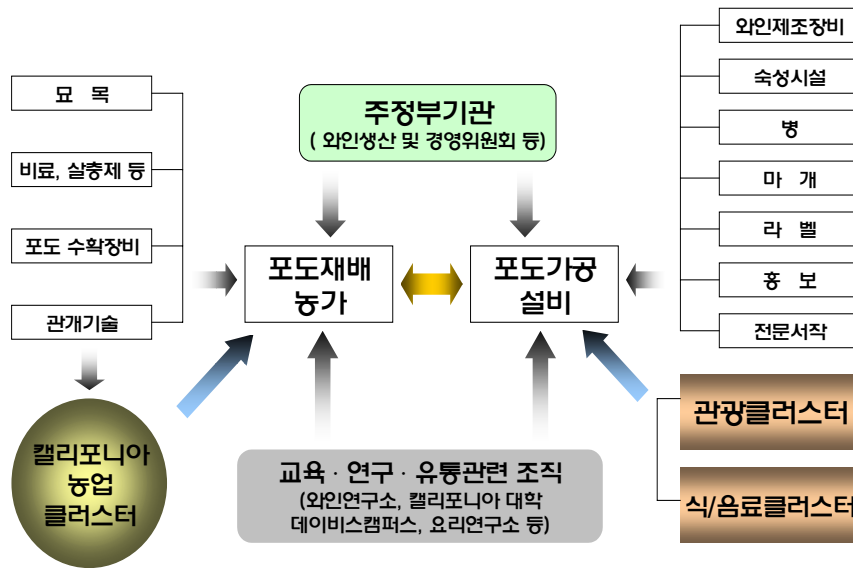
-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는 미국을 대표하는 와인 생산지이며, 가공업체와 농촌 테마 관광산업이 밀접하게 연계된 농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함.
- 나파밸리 지역은 타 제조업이나 IT 등에 비해 산업화가 크게 떨어지지만, 주정부기관의 행정지원, 연구 및 교육의 지원을 받는다는 강점이 있음.
- 나파밸리는 와인 제조에 있어 전통과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고품질 와인 생산을 추구하는 우수한 전문공급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
- 나파밸리 클러스터는 주정부기관(와인 생산 및 경영위원회 별도 운영)의 지원 아래 클러스터 구성주체간의 역할을 확실하게 분담하며, 관광산업과 연계

<sup>4</sup> 농업 분야의 클러스터 사례는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자율성 강화 및 농업 클러스터 추진방안』(내부자료), 2004.8., 농림부,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2007. 에서 요약·인용함.

한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됨.

- 묘목, 재배방법, 수확기계 등을 개발·보급하며 포도 재배 농가에 필요한 생산 현장·애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연구기관이 중요한 역할 담당

그림 2-1. 나파밸리 와인클러스터의 구성요소



자료: 김정호외(2004)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방향』.

## 2) 노르웨이 농식품클러스터(Agrofood Clu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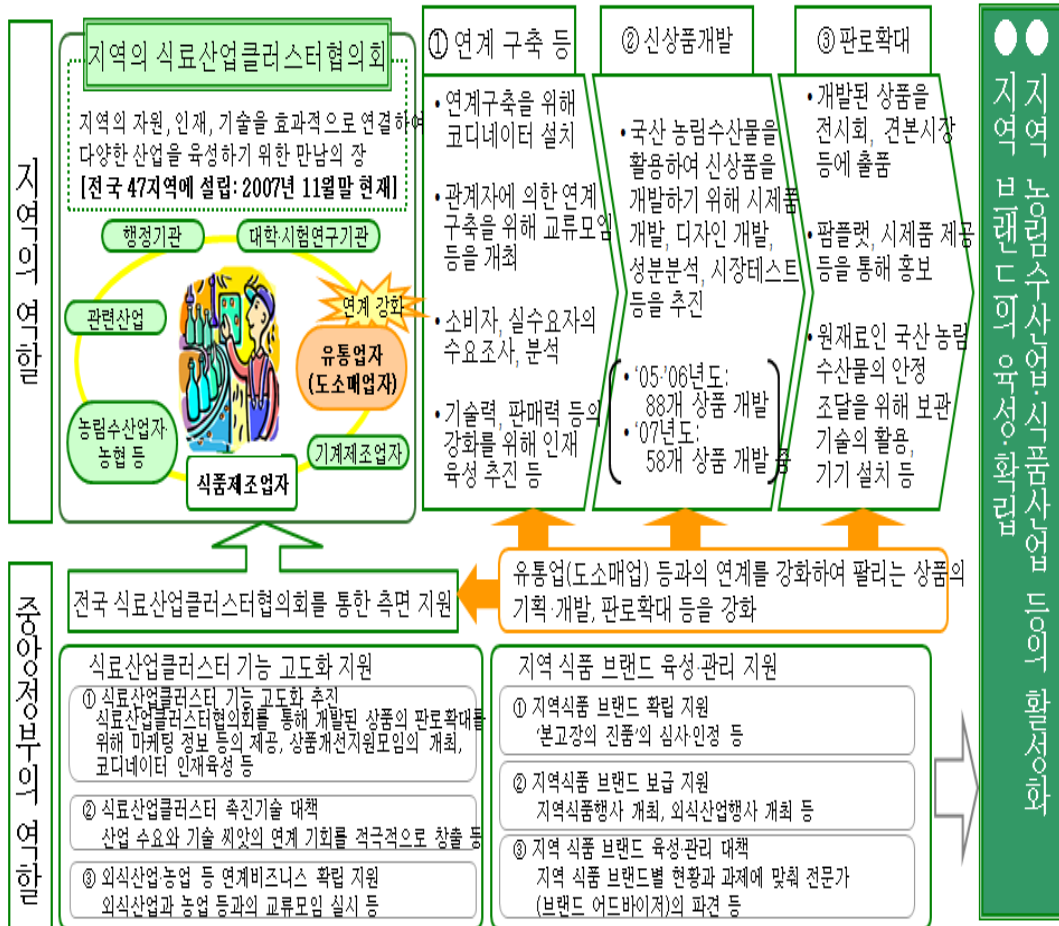
- 노르웨이 농식품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품목과 산업체, 연구단체가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일관된 연계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임.
  - 생산자, 산업체, 연구단체 및 소비자들까지 횡적·종적 관계 유지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역할 분담
- 농식품 클러스터는 총 네 가지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각 프로젝트 내에 3~4개의 하위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3차원적 관계를 유지함. 각각의 하위 프로젝트 간에도 상호 동일한 목표가 공유되고 있음.

- 또한 지역특화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어, 지역특화형이라고는 하나 오히려 종합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음.

### 3) 일본 식료산업클러스터

- 일본 식료산업클러스터는 지역 농림수산업·식품산업 등의 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의 육성·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식료산업클러스터 전개사업’에서 최초로 도입됨.
- 농식품 유통시스템의 합리화와 국산 푸드시스템 확립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산·학·관 연계로 지역 식품산업과 농업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료자급률 향상과 식료의 안정공급을 도모하는 정책사업임.
  - 식료산업클러스터 협의회는 신상품 개발, 산지브랜드 육성, 교류 촉진, 코디네이터 육성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 식료산업클러스터 협의회를 2005년부터 5년간 국내에 45개소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7년 전국 46개 도도부현에 설치·운영함으로써 목표를 달성
  - 기본틀 구축, 인적자원의 획득과 육성, 과제추출·계획작성 및 방책 검토, 기술개발 등의 계획 실시, 새로운 과제의 정리와 검증, 신제품의 상품화·제품개발·브랜드 개발 등의 기본틀 속에서 합의를 형성하는 것을 주된 추진방법으로 함.
- 2007년부터 식료산업클러스터의 새로운 사업 전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식료산업클러스터 전개사업을 도입함.
  - 식품산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보 수집·제공, 새로운 전략식품 창출, 지역식품브랜드 육성·관리 지원사업, 판로개척과 원재료의 안정적 조달 등을 목표로 식료산업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지원
  - 기술 보급의 거점으로서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센터 설치 지원

그림 2-2. 일본의 식료산업클러스터 사례



자료: 류승환(2010), 『산업입지정책과 농식품산업』, 농식품부 세미나 자료.

## 2.2. 외국의 경제자유구역 사례

### 2.2.1. 홍콩

- 세계적인 수준의 항만과 공항을 바탕으로 동남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하이테크 첨단산업 R&D 기업을 유치하고자 도입됨.
  - 국제 중계무역센터, 국제 금융센터, 국제정보통신 및 물류센터의 기능을 망라한 산업, 물류, 무역에 관한 종합서비스센터 기능과 역할을 수행
-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정(1990)을 통해 자유항으로 규정함.
  - 국내외기업에 대한 동등대우, 출자비용, 현지인고용, 국산화비율, 이윤송금 및 재투자 무제한
  - 홍콩에서 획득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도 타국에서 비과세한 경우 비과세
  - 무역, 금융, 외환거래 관련 규제 및 행정 절차 간소화
  - 수입규제는 공중위생 및 안전에 유해한 물품, 전략비축물자, 세계 공통규제물품에 한정
  - 수입관세는 주류, 담배, 메틸알코올, 석유 등 4개 품목에 물품세 부과
  - 민간중심의 운영체제확립으로 효율적인 공항 및 항만서비스 제공
  - 항만의 경우 정부는 인프라, 금융 및 산업여건을 주도적으로 조성, 운영 관리는 민간부문으로 전환

### 2.2.2. 싱가포르

- 무역자유화와 외자유치를 추진함.
  - 정부 주도로 무역자유화와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90년대 이후 선진서비스산업을 유입하며, 중점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대는 공업단지, 자유단지, 보관창고 및 유통지역, 성장, 삼각지대 등으로 구성
- 투자유치 담당기관은 경제개발청으로 국내외를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서 경제

개발기능을 담당함. 외국인 투자유치에 막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각종 인센티브 수립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무역개발청, 주룽도시공사(JTC), 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하에 투자 관련 전 분야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해외본부, 클러스터 개발, 기업서비스, 기업환경계획 등 4개의 본부가 있으며, 17개 해외조직망을 설치

### 2.2.3. 두바이

- 1985년 중동 최초로 두바이에 제벨알리프리존(JAFZ)이라는 명칭의 경제자유 구역을 설립함.
- 원유고갈에 대비하여 세제혜택과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함.
  - 05년부터 항만·세관·자유무역지대 관련 행정기관을 통합한 PCFZC (Ports, Customs & Free Zone Corporation) 설립,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경쟁력있는 투자환경조성정책(4無2多Competitive)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빠르게 성장함.

표 2-9. 두바이의 4無2多Competitive 정책

4無정책	2多정책	4Competitive정책
-無세금	-다양한 물류여건 -다양하고 편리한 지원 시스템	-Competitive 수입관세(5%)
-無환율통제		-Competitive 인건비
-無노동쟁의		-Competitive 에너지 비용
-無스폰서		-Competitive 부동산 가격

주: 1) 스폰서 제도란 외국인의 경제활동시 UAE 국민을 동업자로 선정해야하는 제도

- 이를 위해 제벨알리프리존 내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함.
  - 도로, 전기통신, 용수공급 등 기반은 자유구역청(Free Zone Authority)에서 제공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부담



- 외국인 외국기업에 99년간 토지 임차권을 제공하고 제벨알리프리존 내에 외국인 토지소유권을 100% 보장
- 주택구입시 주거비자가 발급되고, 거래 시 2%의 등록세 이외 세금 면제
- 약 80개의 외국인학교 설립,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 케어 시티 조성
- 각종 세금이 없으며,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전부 본국에 송금 가능
- 외국인의 100% 기업소유권 인정(非Free Zone은 49%만 인정)

#### 2.2.4. 상해 푸동특구

- 상하이시와 장강삼각주 중하류 지역은 물론 중국 전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거점과 국제 금융·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목적 하에,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하여 개발을 추진함.
- 종합적 신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무역구, 고신기술구, 수출가공구, 보세구, 공업구, 여유구 등으로 지역을 구분함.
- 3단계 개발 계획을 수립, 단계별 시행 체계를 구축함.
  - 1단계(1991-1995년): 개발 초기단계, 국내의 국가급 개발구를 중점 개발하여 중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
  - 2단계(1996-2000년): 중점개발단계, 사회간접자본을 계속 확충하여 비교적 완비된 푸동특구 형성
  - 3단계(2002-2010년): 전면적 개발단계, 외향경제를 중심으로 현대화된 공업기지과 금융, 무역, 과학기술정보의 중심지로 발전
- 투자인센티브 제도의 주요 지원대상은 금융, 무역, 정보통신 등임.
  - 법인세는 생산형, 인프라형, 금융형 기업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며, 수출기업 및 선진기술 기업은 10%의 추가적인 세율 경감혜택이 주어짐.
  - 그외 지방소득세 경감, 수출품의 관세 면세, 송금세 면제, 재투자에 대해 40% 환급 등 다양한 세제 지원
  - 행정지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 장기 토지 임대 또는 토지사용권 분양

표 2-10. 외국의 경제특구 특징 비교

구분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해(푸동특구)	두바이
유치 목표	금융, 서비스업 중심	금융, 서비스업 중심	제조업 중심 (단, 향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위주로 전환)	관광 및 물류 중심
전담 기관	EDB	Invest HK	푸동관리위원회 투동신구투자유치반	자유무역지대관리청
입주 조건	국내외기업 무차별	국내외기업 무차별	국내외기업 무차별	국내외기업 무차별
법인 세율	18%	17.5%	25%	0%
조세 감면	특별한 규정 없이 사안에 따라 탄력적 혜택부여(최장15년)	없음	없음	세금 없음
현금 지원	EDB의 자율적 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없음	없음(단, 초기에는 일부 하이테크 기업등에 지원한 사례 있음)	없음
노사 관계	노사분규 원칙적 불법 무노동 무임금 정리해고 조건 유연	노사분규 거의 없음 무노동 무임금 정리해고 조건 유연	정부 개입 적극적 노조 단체행동권 없음 정리해고 조건 엄격	노동관련 규제 없음
인력	영어상용화 (의사소통능력 아시아 1위)	영어상용화	저렴한 인건비	외국인노동자 채용 자율
외국 교육 기관	비영리·영리 가능 내국인 입학 가능 등록금수입 송금허용 재정지원	비영리·영리 가능 내국인 입학 가능 등록금수입 송금허용 재정지원	비영리·영리 가능 내국인 입학 가능 등록금수입 송금허용 재정지원	비영리·영리 가능 내국인 입학 가능 등록금수입 송금허용 재정지원 *MIT유치시 1억불지원('05년)
	국제사립학교벨트(30여 개), Duke대, 네바다 주립대 등 운영중	40여개 국제학교 운영중	외국인전용 국제학교(상해 10개) 및 국내외합작학교 운영중	런던비즈니스스쿨, 미시건대 등 유치
의료 기관	외국인진료소 운영	영어상용화로 구분없이 일반병원에서 진료	외국인전용 병동 운영 외국병원 설립, 허용	외국병원 설립 허용
기타	안전한 치안환경, 영어 상용화로 인한 생활의 편의 등 정주환경 우수	서구화된 관행, 편리한 도시환경, 외국근로자의 근무선호도 아시아 1위	'90년부터 진행된 개발로 선진국형 도시환경 조성 완료	중동국가 중 비교적 개방된 문화, 외국기업 친화적인 분위기

자료: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www.fez.go.kr).

## 제 3 장

### 농식품산업특구의 개념과 필요성

#### 1. 농식품산업특구의 개념 및 유형

##### 1.1. 농식품산업특구의 개념 및 차별성

###### 1.1.1. 농식품산업특구의 개념

- 농식품산업특구는 농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식품산업의 산업적 특수성과 산업입지 측면의 공간적 특수성을 결합한 개념임.
  - \* 농식품산업특구 = 농식품산업(산업적 특수성) + 산업입지(공간적 특수성)
- 농식품산업특구는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연구 및 교육시설 등을 조성·설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특별한 지역(특구)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농식품산업특구는 농식품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산업입지정책을 도입한 지구임.
- 농식품산업특구를 활성화시키려면 특구 내에 조성되는 관련 산업의 주체들(기업 포함)과 기관들의 경쟁과 협력을 강화하는 클러스터화가 필수적임.
  - 클러스터는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지역과 산업정책을 연계한 산업

입지 활성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클러스터란 특정분야에서의 경쟁 또는 협력관계인 기업, 전문공급업체, 용역업체, 관련 산업의 기업 등과 기관들(대학, 공인기관, 기업연합회 등)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결집체(포터, 1990;1998)

### 1.1.2. 농식품산업특구의 차별성

- 농식품산업특구가 기존의 산업단지와 크게 다른 점은 ‘제조업 중심’이 아닌 ‘농산업 중심’으로 조성된다는 점임.
  - 농촌에 입지한 농공단지에는 제조업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농산업 중심의 계획입지인 농식품산업특구와는 다름.
- 또한, 농식품산업특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와 크게 다른 점은 국가 수준에서 계획된 입지라는 점임.
  - 농식품산업특구는 국가의 농식품산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단위에서 계획·지원·운영·관리하는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지원·운영·관리함.
  - 물론, 중앙정부는 농식품산업특구의 지정 및 운영 시 지자체와 협력해야 함.

표 3-1. 농식품산업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와의 차이점

구분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농식품산업특구 제도
목적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특색있는 지방=세계화)	농식품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법적 근거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신규 법안(계획)
추진 주체	지방정부 중심 - 지방이 모든 사업내용을 구상하고, 국가는 규제특례 혜택만 부여	중앙정부 중심 - 국가가 대상지역·사업, 부동산 공급 등 주요사항을 결정
사업 내용	제한없음 - 교육·의료 등 SW적 지식산업도 가능	농식품산업 및 관련 분야
재정 지원	없음 - 다만,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있음(국가의 예산 지원)
세제 지원	없음	있음
규제 적용	지방이 규제혜택 선택(지역별 규제 차등), 규제 강화도 가능	동일한 내용의 규제혜택 부여 규제완화·폐지 유형
책임 소재	지방정부	주로 중앙정부
규제 인허가	특화사업관련 인허가를 특구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 원스톱으로 일괄처리 지원	신규 법안에 따라 인허가 일괄 처리

주: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부문은 지식경제부(2009) 「지역특화발전특구 연례보고서」에서 발췌.

## 1.2. 농식품산업특구의 유형

- 농식품산업특구는 농식품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집적형(간척지형): 특정 지역에 자본·기술을 집약한 지구
  - 벨트형(범위의 경제형): 품목별 주산단지를 연계한 지구
  - 자원관리형(수산형): 자연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지구

표 3-2. 농식품산업 특구의 유형별 구분

구분	집적형	벨트형	자원관리
비전	농식품산업의 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정책 목표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품목별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	수산자원의 선점 및 산업화 촉진
대상 지역	간척지	품목별 주산단지를 연계	갯벌, 연안 등
개발 체계	①지자체 등의 지구개발계획을 수립 ②농식품부가 지구로 지정하고 계획에 따라 개발 추진	①품목조합(법인) 또는 지자체가 품목별 구조개선계획을 수립 ②계획에 따라 주산지를 조직화하여 벨트 조성 ③농식품부가 지구로 지정하여 개발 추진	①전문적인 가치분석 작업을 통해 자원 및 지역을 발굴 ②발굴한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여 입지계획에 따른 개발 추진
주체	농식품부·지자체	농식품부·품목조합(법인)·지자체	농식품부·지자체

표 3-3. 농식품산업화지구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		예산	
집적형	대규모 농업회사 육성		2,078	194,421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유리온실)		75,700	
	농식품산업특구 조성(신규)		116,643	
벨트형	(조직화)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13,200	956,175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 육성	19,975	
		브랜드 경영체 종합지원	923,000	
자원관리형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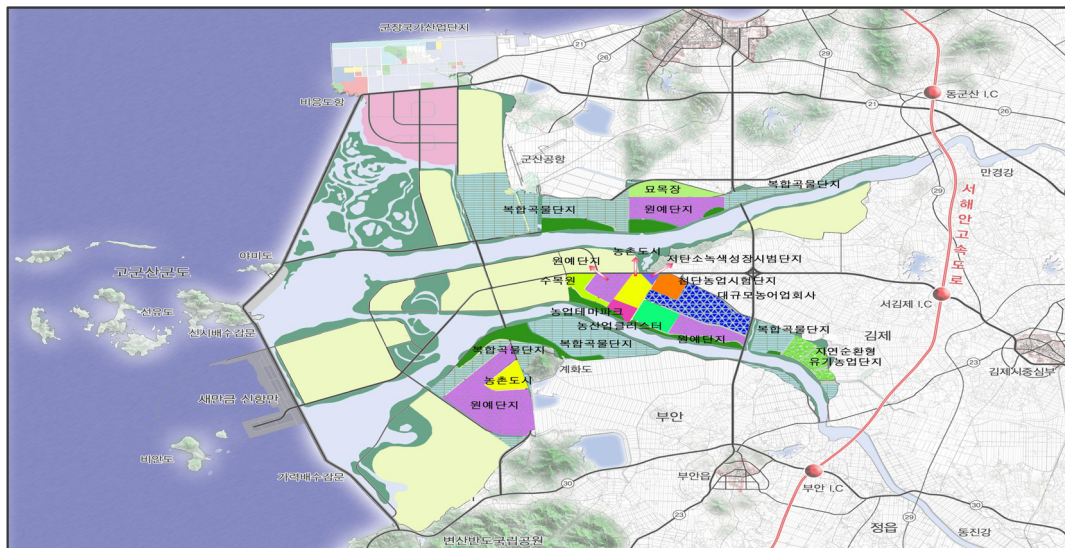
주: 3가지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시설, 자금 등 각종 지원 사업)은 제외.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중기예산('10~'14) 자료.

### 1.3. 농식품산업특구의 유형별 특성

#### 1.3.1. 집적형(간척지형)

- (이론) 집적형 입지정책: 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 관련 산업을 특정한 지역에, 최적 장소에 입지
- (형태) 간척지를 중심으로 규모화된 농업생산을 포함한 소과정(가공, 유통, 물류 등) 및 多분야(품목, 연구, 교육, 관광, 휴양 등)를 연계·집적화
  - \* 기초 인프라는 국가에서 구축하고, 개별적인 농림사업을 연계하여 지원
- 타 분야는 집적형 입지정책을 활용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 중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부처별 개별법을 제정하여 조성

그림 3-1. 집적형 지구의 개념도(새만금)



자료: 박석두 외(2009)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 1.3.2. 벨트형(범위의 경제형)

- (이론) 기존 농가 단위 구조개선(조직·규모·연계화)에서 규모화된 조직 단위로 확대: ‘범위의 경제’를 통한 총체적 비용절감 실현



- (형태) 품목조합(법인)이 품목별 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분산된 주산단지들을 조직화하여 벨트 구축 및 개발 추진  
\* (예)제주도의 감귤 벨트, 들녘별 경영체 육성(농산경영과)

그림 3-2. 벨트형 지구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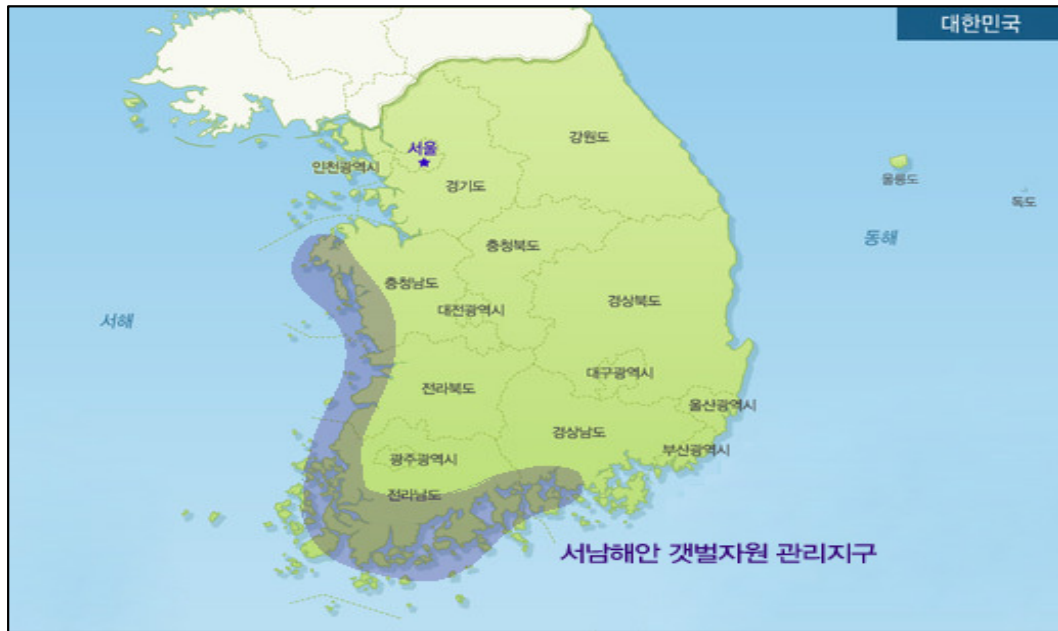


- 농업의 산업적 측면과 농촌의 지역개발 정책을 결합한 통합형 개발방식으로 추진
  - (산업적 측면) 벨트별 입지계획에 따라 지원시설(APC, RPC 등)을 조성
    - \* 다양한 농림사업을 활용한 지원이 가능토록 사업지침을 개정
  - (지역개발 측면) 삶터·쉼터·일터가 공존하는 종합적인 농촌지역 개발 추진
    -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을 활용하여 개발 가능
    - \* 마을정비구역 : 농촌 공간을 계획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농업생산, 정주여건, 농촌관광 등 포괄적 계획 개발에 이용

### 1.3.3. 자원관리형(수산형)

- (이론) 한정된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 계획적인 자원 관리 및 개발 체계 구축
  - 기존의 자원 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 활용하고, 대체 자원을 발굴하여 新성장동력원으로 개발할 필요
    - \* 자연자원의 가치분석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연구의 선행이 필요
- (형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산업적 이용을 위해 갯벌, 연안 등을 자원 관리 지구로 지정하여 입지계획 수립 및 개발
  - \* (예)서·남해안 新갯벌어업 육성 정책(어업자원관)
    -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생물서식 및 생태계 정화 기능이 뛰어난 양질의 갯벌 보유(2,550km<sup>2</sup>, 전 국토면적의 2.5%)
    - 유희갯벌을 이용한 친환경 갯벌어업단지 개발 및 지원근거 마련 등
- 자원관리형 지구의 개발은 부처간 업무영역의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한 후,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 관계부처 : 국토해양부(해양환경·자원 등), 환경부(생태·자연자원(내륙지) 등)

그림 3-3. 자원관리형 지구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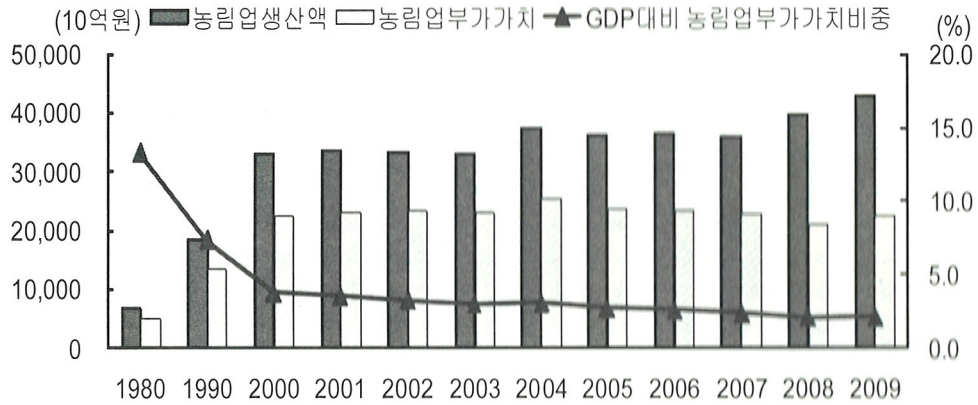


## 2. 농식품산업특구의 필요성

### 2.1. 국내 농식품산업은 경쟁력 약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 필요

- 국내 농림수산업 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국민경제의 2% 수준임.
  - 농림수산업 부가가치액은 2004년 25조 5,549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2004년 대비 16.8% 감소한 23조 4,411억 원
  -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업 부가가치액 비중은 1980년 13.3%, 1990년 7.3%, 2000년 3.8%, 2009년 2.1%로 크게 감소
  - 농림수산업 생산액은 2004년 37조 2,886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07년까지 하향 추세였으나, 2008년 전년대비 10.7%, 2009년 전년대비 8.4% 증가

그림 3-4. 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 한국은행 국민계정(명목기준).

- 1990년대 중반부터 수입농산물 유입 등으로 농산물 시장은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어 가격이 하락하고 성장은 정체하는 현상을 보임.
  - 농가교역조건은 1995년 130.1에서 2000년 111.7, 2009년 83.2로 악화되고 있고, 농업부가가치는 같은 기간 19.9조 원, 21.7조 원, 21.4조 원으로 정체 내지 감소
  - \* 농림어업 GDP 23.4조 원(국가전체 2.4%)/농가 1인당GDP 7.8천 불(OECD 최하위)
  - \* 2009년 수입액: 212억 불(수출액[48억 불]의 4.5배)
  - 향후 주요국과의 FTA, DDA 등 예정된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농업생산과 총소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위험성이 있음.
- 한국농업은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이 정체되어 있고 자본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은 2005년 기준으로 미국과는 5.9년, 일본 4.1년, EU 3.2년 뒤져 있고, 중국보다는 3.3년 앞서 있음(서중혁, 2007).

표 3-4. 요소별 생산성 추이

연도	노동생산성(원/시간)	토지생산성(원/10a)	자본생산성
1995	9,387	954,171	0.61
2000	11,778	1,050,677	0.47
2005	12,297	1,140,668	0.36
2006	13,384	1,160,585	0.36
2007	12,839	1,077,383	0.34
2008	13,157	1,178,495	0.30
2009	14,061	1,229,455	0.31

주: 노동생산성=농업부가가치/영농시간, 토지생산성=농업부가가치/경지면적, 자본생산성=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0.

## 2.2. 확대되는 동북아시아 배후시장 기회 활용 필요

- 세계 농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리·문화적으로 근접한 동북아시아가 거대 농식품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세계 농식품시장 규모는 4조 3,910억 달러(data monitor, 2008년 기준)로 자동차시장(1.6조 달러), IT시장(2.8조 달러)보다 큰 규모임.

표 3-5. 주요국의 농식품시장 규모

구 분	2010년	2020년
세계농식품시장규모	4조 3,910억 달러	6조 3,530억 달러
E U	(31%)	(30%)
아시아-태평양	<b>(36%)</b>	<b>(40%)</b>
북 남 미	(26%)	(23%)

자료: 매일경제, 「아그리젠토 코리아」, 2010.

-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산층이 아시아지역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고품질 고가농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상하이 까르푸의 유기농 오이는 일반 오이의 7.7배, 유기농 양파는 6.5배 비싸게 팔림.

그림 3-5. 동북아 주요국 중산층 현황



주: 중산층 1인당 소득은 1.5만 달러 이상.

자료: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 이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력 갖춘 전략적 수출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선진국은 이미 규모화되고 집적화된 농식품 수출전략기지를 집중 육성하고 있음.
  - \* 네덜란드(Agriport A7, Food valley) 등
  - 특히, 한류 및 한식 세계화 정책으로 인해 차별화된 우리의 농식품 수요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 김치는 2006년 미국 Health지에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소개
  - \* 2001년에 김치, 2009년에 고추장, 된장, 인삼이 CODEX 식품규격에 등재

### 2.3. 새로운 농식품산업화 모델 필요

- 농식품산업의 모든 기능을 집적한 글로벌 생산기지, 1차·2차·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한 첨단 컨버전스 농업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 새로운 농식품산업화 모델이 필요함.
- 2020년까지 서해안 지역에 개발되는 간척지 3만 394ha(여의도의 103배)

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생산기지(첨단원예단지, 일반원예단지, 자원순환형 축산단지, 복합곡물단지), 컨버전스 농업단지(가공·유통·물류단지, 교육·연구단지, 지원단지), 녹색성장기반(관광농업단지, 주거단지)을 핵심으로 하는 간척지형 농식품산업특구 모델(직접형)이 필요함.

표 3-6. 간척지 현황

계	공사 시행중(7지구, 24,867ha)							완공후 처분전(5지구, 5,527ha)				
	화옹	시화	이원	새만금	삼산	영산강 III-1	영산강 III-2	보전	석문	남포	고흥	군내
30,394	4,482	3,636	847	8,570	283	3,093	3,956	213	1,968	825	2,057	46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간척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2010.

-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기반(지역특산물 및 향토자원)을 지역개발 정책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의 산업적 측면과 농촌의 지역개발 정책을 결합한 통합형 개발방식 모델: 기존의 농가단위 구조개선(조직·규모·연계화)에서 규모화된 조직단위로 확대해 ‘범위의 경제’와 총체적 비용 절감을 실현하는 모델(벨트형)
    - \* 분산된 주산단지들을 조직화하여 벨트 구축 및 개발: 개별주체(농가) → 지역(시·군) → 광역화(脫경계)
    - \* (예)제주도의 감귤 벨트, 들녘별 경영체 육성(농산경영과)
- 국제 ABS 협약 등 생명자원을 지적재산권화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업화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산업적 이용을 위해 갯벌, 연안 등을 자원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입지계획 수립 및 개발하는 모델(자원형)
    - \*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생물서식 및 생태계 정화 기능이 뛰어난 양질의 갯벌 보유(2,550km<sup>2</sup>, 전 국토면적의 2.5%)
    - \* (예)서·남해안 新갯벌어업 육성 정책(어업자원관)

## 2.4. 국제 곡물수급 불안과 식량안보에 대비

-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6.7%에 지나지 않음. 밀과 옥수수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콩도 식용을 제외하면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기준으로 밀의 자급률은 0.5%, 옥수수는 1.0%, 콩은 8.4%에 그침.

표 3-7.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자급률

단위: %

연도	전체	쌀	밀	옥수수	콩
'70	80.4	93.1	15.4	18.9	86.1
'80	56.0	95.1	4.8	5.9	35.1
'90	43.1	108.3	0.05	1.9	20.1
'00	29.7	102.9	0.1	0.9	6.4
'05	29.4	102.0	0.2	0.9	9.7
'09p	26.7	98.0	0.5	1.0	8.4

자료: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각 연도.

- 곡물자급률을 일정수준(예, 30%)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필요농지를 확보해야 함.
  - 동계답 추가 활용이라는 시나리오하에 곡물 자급률을 2015년 및 2020년 목표치를 30%로 설정할 경우, 필요 농지는 1,653ha 수준임(김수석 외, 2008).
  - 또한, 적정 수준의 필요농지 확보는 향후 통일 대비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중요
- 식량안보 차원에서 간척지를 활용한 농식품산업특구(집적형)에서 1차 농작물 생산지인 곡물단지를 지정하여 필요농지의 일정 부분을 보전농지로 확보 필요

표 3-8. 필요농지 면적 추정(곡물자급률 30% 설정)

단위: 천ha, %

구 분	2007(실측치)	2015	2020
이용면적	1,856	1,953	1,941
경지이용률	103.1	113.4	114.0
곡물자급률	27.4	30.0	30.0
필요농지 면적	1,744	1,648	1,653

자료: 김수석 외,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 개편방안(1/2차 연도)』, 2008

### 3. 농식품산업특구의 추진 방향

#### 3.1. 첨단·부가가치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모델 정립 및 확산

- 기본적으로 생산-가공-유통-연구-교육 등 모든 과정이 연계된 클러스터 형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내수시장 안정화, 국제시장 다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농식품산업의 거점 수출전략기지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구단위의 범위를 행정단위와 일치시킬 필요는 없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접목해야 함.
  - 특정지역에 자본과 기술을 집약하는 집적형은 간척지에 적합함.
  -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여 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벨트형은 품목별 주산단지를 연계하는 데 적합함.
  - 자연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자원관리형은 갯벌이나 연안 등 수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적합함.



### 3.2. 농식품산업특구 육성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필요

- ‘농식품산업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특구 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준비해야 함.
  - ‘산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와 차별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농식품산업특구의 지정·개발·관리·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이 필요함.
  - 특구 정책의 기본방향, 특구조성 예정지의 현황과 전망, 지역별·유형별 조성계획,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중장기 육성방향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 조성, 자금지원, 조세 특례, 교육 및 인력 등 맞춤형 포괄 지원이 가능토록 추진해야 함.

### 3.3. 특구내 친환경적이고 저비용·에너지 절감형의 지속가능한 시스템 강화

- 이러한 농식품산업특구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 녹색성장 정책방향에 상응한 친환경적이고 비용 및 에너지 절감형 구조로 정착시켜야 함.
-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 고효율화 구조 설계, 집적화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한 CO<sub>2</sub> 저감 등 지속가능한 저비용 농식품산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

### 3.4. 농식품산업특구 추진시 단계별 접근 필요

- 우선, 규모화 및 조성이 용이한 간척지를 중심으로 (집적형)특구를 지정하고, 향후 내륙지방(벨트형)으로 확대하고 수산분야(자원관리형)도 포함토록 추진

해야 함.

- 2020년까지 활용가능한 간척지는 30,394ha(여의도의 103배)
  - 2009년말 기준 활용이 가능한 간척지는 11천ha(여의도의 37배)이고, 2012년 이후 매년 2천~3천ha에 달하는 간척농지 준공
- 본격적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 및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 등과 같은 개별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
  - ‘(가칭)한국농식품산업공단’ 설립과 같은 농식품산업특구 사업의 추후 개발 및 관리체계가 필요함.

## 제 4 장

---

### 농식품산업특구의 경제성 분석

#### 1. 농식품산업특구의 기본 모델

##### 1.1. 배경

- 농식품산업특구를 그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집적형, 벨트형, 자원관리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유형별 기본 모델을 모두 제시하기는 어려움.
  - 특히, 벨트형이나 자원관리형은 품목별 주산단지 및 자연자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특구가 존재할 수 있음.
- 반면, 간척지형인 집적형은 보다 계획적인 접근이 가능하므로 여기서는 집적형 농식품산업특구에 대한 기본 모델을 도출하고, 특구 조성비용, 특구의 경제적 파급효과, 입주기업의 경제성을 분석함.
  - 간척지별로 개발 정도 및 토질, 주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특구 조성 및 운영 계획이 다를 수 있으나 타 유형에 비해 계획적인 접근이 용이함.

## 1.2. 기본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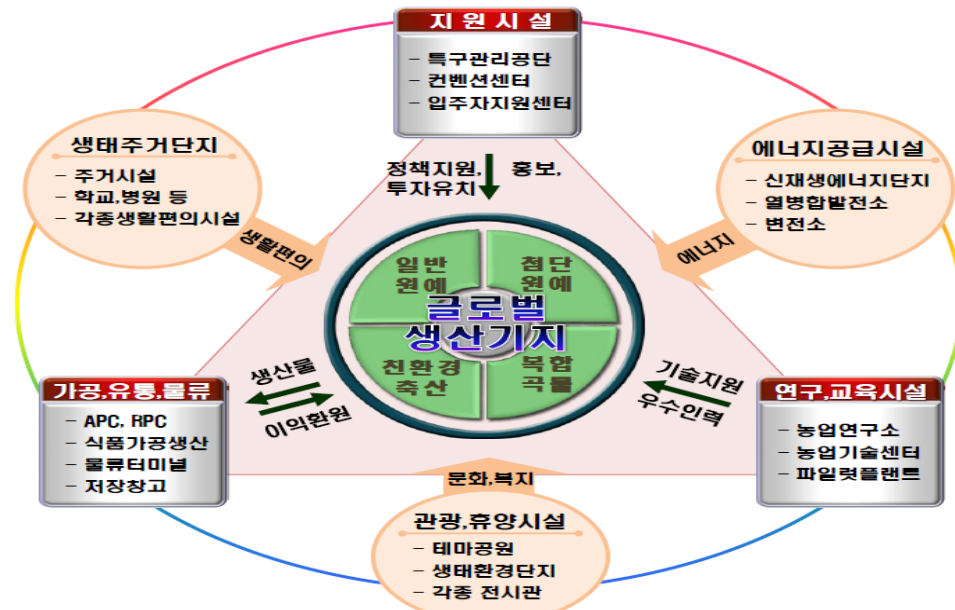
- 집적형 농식품산업특구를 조성함으로써 간척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집적형 농식품산업특구는 크게 성장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농식품시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위해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컨버전스 농업의 실현, 녹색성장기반 구축이라는 전략적 방향으로 농식품산업특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전략: 대규모 복합영농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 및 일반원예, 자원순환형 축산, 복합곡물단지 등 조성
  - 컨버전스 농업 실현 전략: 1차산업(농업생산), 2차산업(제조 및 가공), 3차산업(유통 및 관광)의 융·복합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공·유통·물류, 교육·연구, 지원단지 등 조성
  - 녹색성장기반 구축 전략: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대응한 생태환경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광농업, 생태주거, 녹색기술단지 등 조성

그림 4-1. 집적형 농식품산업특구 구성도



자료: 농어촌공사 농식품산업특구팀, 2010.

그림 4-2. 집적형 농식품산업특구 시설관계도



자료: 농어촌공사 농식품산업특구팀, 2010.

## 2. 특구조성 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 2.1. 총 사업비 산정

- 농식품산업특구 조성사업 비용을 2,000ha 면적<sup>5</sup>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총 3조 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농어촌공사 농식품산업특구팀, 2010).
  - 특구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특구의 규모, 위치, 세부아이템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모델

<sup>5</sup> 2,000ha 기준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상정한 것으로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님. 단, 집적형 특구는 간척지형임.

개념만을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하였음.

- 개략사업비 세부내역 비율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반영하였음. 양수장·도로시설 등 기 설치된 시설의 경우, 평균사업비를 참조하여 반영하였음.

표 4-1. 농식품산업특구 모델 사업비 추정

단위: ha, 억 원

구 분	면적	비율	사업비 합계	비 고	
총 계	2,000	100	32,954		
소 계	1,400	70	14,631		
클로별생산기지	첨단원예단지	300	15	10,602	• 첨단유리온실 (토마토, 파프리카등 시설채소 및 화훼 등)
	일반원예단지	500	25	2,190	• 비닐하우스, 비가림재배식물 (포도, 무화과, 참다래, 블루베리, 복분자 등)
	자원순환형 축산단지	100	5	1,381	• 조사료 재배시설과 연계 • 친환경축사, 경축자원화센터, 도축·가공시설 등
	복합곡물단지	500	25	458	• 곡류 저장·가공시설(맥류, 콩, 옥수수 등)
	소 계	210	11	3,671	
컨버전스농업단지	가공·유통·물류단지	100	5	4,715	• 가공, 유통 시설 및 물류터미널
	교육·연구단지	100	5	3,161	• 연구 및 교육시설, 교육지원 시설
	지원단지	10	1	510	• (가칭)특구관리공단, 컨벤션센터, 재생에너지, 자원화시설 등
소 계	390	20	9,938		
녹색성장기반단지	관광농업단지	90	5	439	• 각종 전시, 관람, 체험, 휴양시설
	생태주거단지	160	8	7,174	• 주택단지, 생활편의시설 등
	녹색기술단지	140	7	2,325	•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시설 등

주: 총사업비는 농어촌공사 농식품산업특구팀에서 추정한 결과를 도입하였음.  
자료: 농어촌공사 농식품산업특구팀, 2010.

## 2.2. 세부 단지별 사업비 산정

### 2.2.1. 글로벌 생산기지

- 첨단원예단지, 일반원예단지, 자원순환형 축산단지, 복합곡물단지 등의 시설이 배치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총 1,400ha의 면적을 가정하여 산정한 결과, 총 1조 4,6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2.2. 컨버전스 농업단지

- 가공·유통·물류단지, 교육·연구단지, 지원단지 등의 시설이 배치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총 210ha의 면적을 가정하여 산정한 결과, 총 3,67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2.3. 녹색성장 기반단지

- 관광농업단지, 생태주거단지, 녹색기술단지 등의 시설이 배치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총 390ha의 면적을 가정하여 산정한 결과, 총 9,93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2.3.1. 추정 방법

- 농식품산업특구 조성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유발효과로 나누어 계측함.
  - 직접효과는 특구에 형성될 1차산업부문(농축산물 생산), 2차산업부문(가공

- 및 식품제조), 3차산업부문(물류 및 유통, 연구개발, 농촌관광 등)의 세부산업 최종수요 증가와 같다고 가정함.
- 간접효과는 각 세부산업의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전후방관련 산업의 생산과급효과와 같다고 가정함.
  - 유발효과는 이러한 직접효과(최종수요 변화)와 간접효과를 통해 변화된 세부 산업에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가계부문의 소득감소와 소비감소로 발생하는 생산변환효과와 같다고 가정함
- 농식품산업특구 조성 과정에서 개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세부산업별 수요를 확대하고, 이러한 수요확대는 타산업(전후방관련산업)에 영향을 미쳐 전국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아 특구 조성을 통한 1·2·3차산업의 양적·질적 향상을 창출하는 효과는 계측이 어려우므로, 앞 절에서 산정한 사업비 지출만을 직접효과로 보아 분석을 실시함.
- 직접효과, 즉, 농식품산업특구 조성으로 인한 최종수요의 변화는 산업 간의 연관관계를 통해 전후방산업의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이러한 산업 간의 연관관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업연관모형(Input-Output Analysis)을 통해 분석할 수 있음.
- 산업연관분석에서 특정한 최종수요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효과(direct effect), 간접효과(indirect effect)와 유발효과(induced effect)를 모두 합한 개념을 일컫음.
  - 산업연관분석에서 간접효과는 직접효과인 최종수요 변화가 해당 산업부문의 생산과 전후방으로 관련 있는 다른 산업부문의 생산에 영향을 줌으로써 발생하는 파급효과이며, 유발효과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가 유발하는 가계부문의 소득변화에 따른 소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의미함.
- 간접효과와 유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개방모형(open model)과 폐쇄모형(closed model)을 적용함.
- 간접효과는 최종수요부문과 노동 및 자본 등의 생산요소 투입을 외생부문으로 취급하는 개방모형을 통해 추정함.
  - 유발효과는 개방모형에서 외생부문으로 취급한 가계부문의 최종수요와



각 산업부문의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을 내생부문으로 취급하는 폐쇄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함(Miler and Blair, 1985).

### 2.3.2. 추정 결과

- 농식품산업특구 조성사업비는 산업 소분류(168개 부문)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즉, 건축건설 부문 3조 1,168억 원, 토목 및 특수건설 부문 1,786억 원으로 분류하였음.
- 분석 결과 농식품산업특구 조성에 따른 간접효과와 유발효과는 각각 5조 3,001억 원과 5조 8,776억 원으로 추정되었음. 따라서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의한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사업비인 직접효과 3조 2,954억 원을 합하여 14조 4,732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업비 대비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고용효과는 건축건설 1만 8,817명, 서비스업 5,621명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총 2만 9,461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됨.

표 4-2. 농식품산업특구 조성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억 원, 명

산업부문		직접효과 (Direct effect)	간접효과 (Indirect effect)	유발효과 (Induced effect)	총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효과
농림어업		0	463	2,592	3,055	50
광업		0	3,418	2,359	5,777	64
제조업	건축건설	31,168	125	332	31,626	18,817
	토목 및 특수건설	1,786	0	0	1,786	1,998
	기타 제조업	0	35,450	22,578	58,028	2,911
	소계	32,954	35,575	22,911	91,440	23,726
서비스업		0	12,379	29,790	42,170	5,621
기타		0	1,166	1,124	2,290	0
총 계		32,954	53,001	58,776	144,732	29,461

주: 특구조성비에 근거한 파급효과로 특구내 세부산업별 효과분석은 계측되지 않아 해석시 주의

### 2.3.3. 시사점

- 농식품산업특구의 조성사업만으로도 투입대비 4.3배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특구내 조성되는 개별 산업(생산, 가공, 유통, 수출, 연구개발, 관광 등)의 직접적인 생산액과 경영비 등을 고려한 손익구조에 대한 경제성 부분은 계측되지 못함.
-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경제성 효과에 대한 해석시 유의할 점은 직접·간접·파급 효과가 특정기간에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임.
  - 조성사업이 한해에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조성사업에 들어간 투자비가 모두 소진되는 그 시점(조성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들어간 투자비의 직접·간접·파급 효과이므로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나는 모든 효과를 수치화한 것임.
- 또한, 집적형 농식품산업특구의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특구내 조성되는 개별 산업간 연계(cluster)에 의한 시너지효과에 대한 부분도 계측되지 못해 특구의 경제성 분석이 다소 과소평가되어 있음.
-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 농식품산업특구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제성을 다음 절에서 분석함.

## 3. 농식품산업특구 진출기업의 경제성 분석

### 3.1. 진출기업의 산업적 배경: 첨단시설원예사업 진출기업

- 농식품산업특구 기본모델인 간척지형(집적형) 농식품산업특구 모델에서 글로벌 생산기지의 한 부분인 첨단원예단지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제성을 분석함.
  - 분석의 편의를 위해 토마토/파프리카 유리온실 관련 기업으로 한정하여 분석
- 첨단시설원예 사업은 첨단기술분야를 접목한 자본기술집약산업으로 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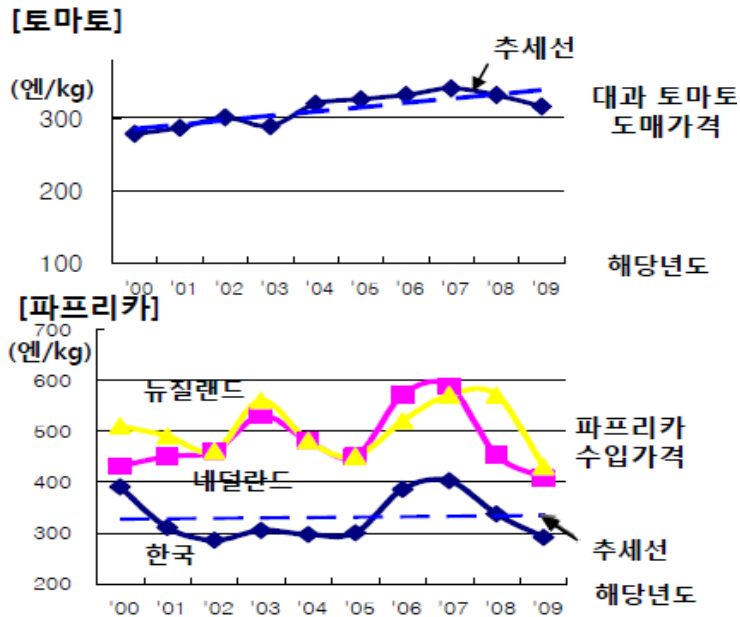
조성시 유관시설의 집적으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표 4-3. 첨단시설원에 사업의 특성 및 기획요인

첨단시설원에 사업의 특성	기획 요인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큰 장치산업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선점 효과 (시장선점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 필요)
IT, BT가 결합된 첨단 미래 산업	자동제어장치, 인식장치, 천적, 종자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첨단산업으로 발전 중인 산업
생산, 가공, 유통분야를 포함한 전후방 연관산업 발전 촉진	2.3차산업을 포함한 전후방 연관산업 발전 가능(육묘산업, 저온저장, 운송, 수확후 관련기술, 온실시공 자재산업, 에너지시설, 관광 등)
기술, 경영, 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인적자원의 역량이 중요	역량을 갖춘 규모화된 조직이 효율적 (농기업 등)
농산물의 물류비용으로 지역별 블록시장 형성	동북아시아의 시장리더 가능 (네덜란드와 물류경쟁조건에서 유리)
유관시설의 집단화로 시너지효과 창출	물류비용의 절감 및 공동시설 이용 등으로 비용절감 가능
농업농촌발전에 기여	선진농업으로의 발전과 농촌의 소득자원화 및 관광자원화 가능

- 토마토, 파프리카 등 고급과채류의 수출 수요는 일본에 편중되어 있으나, 일본의 토마토, 파프리카 가격은 정체상태인 반면 인건비 및 에너지 비용 등 생산원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시장에서 토마토 및 파프리카의 10년간 평균가격은 상승폭이 매우 작음.
    - \* 지난 10년간 파프리카의 평균 일본수출가격은 310엔 수준
  - 물가 및 임금 상승율 등 주요 경제지표 감안시 연평균 3% 수준의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석유자원 고갈에 따른 에너지 비용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임. 이에 대응하여 대체에너지 적용시 초기 투자비용 부담 상승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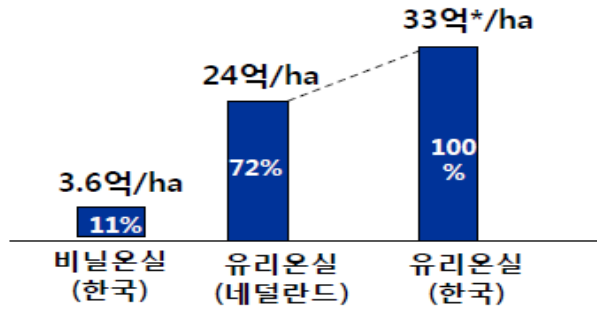
그림 4-3. 일본의 토마토/파프리카 시장가격 추이



자료: 일본 농무성(토마토), 한국무역협회(파프리카).

- 첨단시설원에 사업에는 초기에 대규모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인프라 조성과 투자비용에 대한 직·간접 지원 및 기술축적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함.
  - 유리온실의 경우, 4계절 기후에 적합한 에너지 시스템 및 설비구축, 환경 제어장치 등 고가의 장치가 필요한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또한, 현행 건축법상 첨단유리온실은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담보 대상에서 제외되어(건축법 시행령 15조) 대규모 자금 조달시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장기수익성 측면에서 일본의 파프리카 판매가격은 거의 일정한데 반해 원가는 연 3%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고,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생산성 혁신이 없이는 수익성 담보 어려움.

그림 4-4. 시설원예 투자비 비교



주: 33억/ha는 네덜란드 설비 기준으로 에너지시스템을 포함한 비용.

### 3.2. 국내외 첨단시설원예사업 추진 및 지원 사례

- 1990년대 UR대책의 일환으로 첨단시설원예사업 육성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지원조건 변경 등으로 첨단원예시설에 대한 신규투자가 정체됨.
  - 현재 상당수의 유리온실은 10년 이상된 것으로 생산시설이 노후화됨.

표 4-4. 국내 첨단시설원예(유리온실)의 지원조건 변화 및 면적 추이

사업명	연도	지원조건(%)			총면적 (ha)	비고
		보조	융자	자부담		
성장작목종합시범단지	91~93	60	40	-	25	UR대책의 일환으로 첨단시설원예사업 육성
시범시설단지조성사업	92~96	50	30	20	250	
생산유통지원사업	97~98 1999	40 20	40 60	20 20	323 375	
경영종합자금제도	2000	-	80	20		2000년 이후 정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008~	40	40	20	378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증개축만 가능. 지자체20%보조포함

주: 총면적은 누적 면적임.

- 일본의 경우 강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구축지원 사업인 ‘강한농업 만들기 교부금 사업’을 시행, 최대 50% 무상 지원 및 용자를 지원함.
  - ‘강한농업만들기 교부금 사업’은 산지경쟁력과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식품유통 합리화를 꾀하는 사업으로, 산지경쟁력강화 사업에 시설원예사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표 4-5. 일본 시설원에 대표적 지원사례(무상보조/용자)

단위: ha, 억 엔

기업명	위치	작물	규모	총투자액	무상지원	
					무상지원	%
가고메	히로시마현	토마토	8.5	29.5	13.7	46
	고치현	토마토	2.7	12.7	4.6	36
	이바라기현	토마토	3.0	8.8	4.4	50
	나가노현	토마토	5.3	20.0	10.2	51
토요타통상	미야기현	파프리카	4.2	24.0	11.6	48

자료: 아이치현 농업종합시험장연구보고서 40:1-7(2008) 및 신문보도자료.

- 네덜란드의 경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농업정책으로 투자금과 농산업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음.
  - 성장기 농업인프라 확충 및 기금조성과 지원정책 실시(특별용자, 개발 및 재개발 자금 지원)
  - 도로, 철도, 해상운송 등 원활한 물류시스템과 선진화된 유통시스템 구축
  - 농업과 원예분야의 연구, 지도, 교육사업의 협력시스템 구축(와게닝겐 대학 중심의 연구네트워크)
  - 종자, 시설자재, 컨설팅, 에너지절감시스템 등 관련산업의 집적화

표 4-6. 네덜란드의 시설원예사업 관련 지원

사업종류	지원가능사업
건설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자본비율: 10%</li> <li>• Rabo Bank의 PF 지원: 금리3% 이하수준</li> <li>• \$PF 규모: 무제한→20ha/농가당('10년)</li> </ul>
전기 판매사업권 부여	CHP(에너지시스템) 활용한 전기판매사업자 인정
기타	법인세 감면(25%)

주: PF는 project financing.

### 3.3. 진출 기업의 파프리카 생산 기준 시나리오별 사업성 분석

#### 3.3.1. 기본 전제사항

- 주요 경제지표(물가상승율, 임금상승율, 환율), 자금조달 기준 및 토지활용 기준에 대한 베이스(전제사항)를 설정함.
  - 물가상승율: 매년3% 반영
  - 임금상승율: 매년3% 반영-재료비, 인건비 상승 반영
  - 환율: 과거 5개년('05~'09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1,057원/US\$, 997원/100엔
  - 자금조달기준은 일반금융기관 대출시 이자율 8%를 적용하고, 정부 저리융자의 경우는 3% 가정
  - 간척지 토지 활용기준: 토지임대료는 1,000원/3.3m<sup>2</sup>(농어촌공사 기준)으로 하고, 총 사용면적은 16ha(서비스 및 인프라 면적 포함)로 설정
- 기업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을 계측하기 위해 파프리카 생산 및 판매 계획을 설정함
  - 작물: 파프리카
  - 재배면적: 10ha
  - 단위당생산량: 25kg/m<sup>2</sup>

- 판매단가: 3,100원('05~'09년의 5년간 평균 일본 수출단가 적용; KATI자료 참조)으로 설정하고, 분석시 불변하는 것으로 가정(달러화 기준)
  - \* Loss율은 2% 반영하고 가격은 상등품과 중등품의 가중 평균 적용
- 분석연수: 20년(일괄 반영)
- 물류유통비용은 매출액대비 18% 수준으로 설정
- 간척지에 진출하여 파프리카 유리온실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초기 투자 계획을 설정함.
  - 초기투자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표 4-7. 투자항목별 초기 투자액

단위: 억 원

구 분	투자액(10ha 기준)	비고
유리온실	230	수배전반 포함
에너지	100	수직지열시스템 기준
APC	50	선별기, 저온창고 포함
연약지반	60	파일 공사
육묘장	21	면적: 1ha
기타	20	기숙사, 관리동 등
합 계	481	

### 3.3.2.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

- 수익성 분석에서는 초기 투자액 외에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난방비, 감가상각비, 유틸리티 비용과 판매관리비를 구성하는 물류유통비용, 일반관리비, 토지임대료 등을 계산하고 연도별 변화율(증감율)을 반영함.
  - 노무비: 1ha당 노동인력 6명을 설정하고, 1인당 6만원에 25일 근무를 설정(매니저 비용 1,000만 원 추가)해 노무비는 1억 500만 원/ha



- 재료비: 종자, 배지, 비료, 농약 및 수선비 포함하여 1억 4,100만 원/ha (현재 운영중인 관련업체 자료 참고)
  - 난방비: 수직지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8,000만 원/ha
  - 유틸리티: 탄산가스, 전력, 용수 등에 대한 비용으로 생산최적화를 위해 CO<sub>2</sub> 800ppm 투입 기준 8,500만 원/ha
  - 토지 임차료: 농어촌공사 제시가격 기준(1,000원/평)x1.6배 면적 기준으로 500만 원/ha
  - 물류유통비용 및 loss율: 물류유통비는 총매출대비 18%, loss는 2% 적용
- 특별한 지원없이 초기투자비용(481억 원)을 모두 고려한 20년간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852억 원 적자
- 첨단유리온실사업의 특성상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조건별 시나리오 작성
- Case 1: 에너지 지원(80%) + 연약지반 공사 지원(100%)
  - Case 2: Case 1+ APC 지원(70%) + 육묘장 지원(40%) +저리 용자
    - \* 저리용자는 사내차입 이자율(8%)과 정부 저리용자 이자율(3%)을 4:6으로 적용한 후 전체 차입비율로 가중평균한 할인율 적용
  - Case 3: Case 2+ 유리온실 지원(40%)

표 4-8. 시나리오별 투자액

단위: 억 원

구 분	초기투자비	Case1	Case2	Case3
유리온실	230	230	230	138
에너지	100	20	20	20
APC	50	50	15	15
연약지반	60			
육묘장	21	21	12.6	12.6
기타	20	20	20	20
합 계	481	341	297.6	205.6

주: 에너지 지원, APC 지원, 육묘장 지원, 유리온실 지원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상의 대농민 지원 기준을 적용

표 4-9. 시나리오별 자금조달 기준

단위: 억 원

구 분	초기투자비	Case1	Case2	Case3
자기자본	481	341	119	82
무상지원	0	140	183	275
저리융자	0	0	179	124
합 계	481	481	481	481

- 10ha 유리온실을 기준으로 파프리카 생산성을 최대  $33\text{kg}/\text{m}^2$ (매년 3%씩 생산성 증가 가정)까지 개선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정부지원 조건별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평가(수익성의 지표는 모두 20년 누계)
- Case 1: 매출액은 1,91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300억 원이고, 경상이익은 148억 원 적자이며, 순현금유입분을 현재가치로 환산(NPV)하여 32억 원 적자
  - Case 2: 매출액은 1,91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342억 원이고, 경상이익은 261억 원이며, 순현금유입분의 현재가치(NPV)는 97억 원 흑자
  - Case 3: 매출액은 1,91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435억 원이고, 경상이익은 505억 원이며, 순현금유입분의 현재가치(NPV)는 188억 원 흑자

## &lt;손익계산서 용어&gt;

매출액: 기업이 일정기간 판매한 총량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영업이익 = 총이익 - 판매비 - 관리비

경상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수지, \* 영업외수지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당기)순이익 = 경상이익 + 특별수지 - 법인세,

\* 특별수지 = 특별이익 - 특별손실

그림 4-5.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

구 분	지원 조건	자금조달	주요내용
CASE1	에너지(80%) + 연약지반(100%) 지원	자기자본 341억 무상지원 140억 저리융자 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1,910억원(20년 누계)</li> <li>▪ 영업이익: 300억원, 경상이익: -148억원</li> <li>▪ NPV -32억원</li> </ul>
CASE2	Case1 + APC(70%), 육묘장(40%) 지원 +저리융자**	자기자본 119억 무상지원 183억 저리융자 179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1,910억원(20년 누계)</li> <li>▪ 영업이익: 342억원, 경상이익: 261</li> <li>▪ NPV 97억원</li> </ul>
CASE3	Case4 + 유리온실 지원(40%) +저리융자	자기자본 82억 무상지원 215억 저리융자 124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1,910억원(20년 누계)</li> <li>▪ 영업이익: 435억원, 경상이익: 505</li> <li>▪ NPV 188억원</li> </ul>

주: 현재가치의 할인율은 5% 적용

### 3.3.3. 시사점

- 농식품산업특구에 진출하는 기업, 특히 첨단시설원예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의 과도한 초기투자 비용은 향후 기업의 수익성 부분에 결정적인 장애요인(bottleneck)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매출액이나 경상이익 등 지표들이 모두 20년 누계라는 것과 시장 판매단가('05년~'09년 평균단가)가 20년간 불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는 점임.
- 초기투자 481억 대비 20년 경상수익이 최대(Case 3) 505억이라는 것은 초기투자의 2% 정기예금 수익(단리 적용, 이자수익에 대한 15.4% 세금 부과) 644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자기자본과 저리융자액을 합한 206억(Case 3)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따진다면 8.6%의 정기예금 수익(단리적용, 이자수익에 대한 15.4% 세금부과) 수준의 투자수익률임.

### 3.4. 첨단시설원예산업 진출 기업의 시너지 효과

- 그러나, 향후 우리 농업의 산업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구진출 기업에 대해 전략적인 지원을 강화하면 글로벌 경쟁력 및 국내 관련산업의 발전 등 여러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음.
  - 기존에 주어진 파이(시장)를 나누어 가지는 제로섬(zero sum) 게임이 아닌, 파이(시장) 자체를 키우는 넌제로섬(non-zero sum) 또는 상호 윈윈(win-win)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
- 그동안 현행 농림수산사업 지침서 상으로는 지원자격 조건, 담보조건 등의 문제로 대규모 농업회사의 추진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아 대규모 기업농의 효과를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음.
  - 구체적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일환인 대규모농업회사 육성과 관련된 법규 및 지원 사업 부재
  - 또한, 지원 대상 및 조건의 제한, 저리 용자 규모의 제한, 담보설정에 대한 제한 등 금융지원의 실효성 한계
  - \* 유리온실사업의 지원 대상 및 조건에서 증·개축만 지원이 가능하고 유리온실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여 건설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부재

#### 3.4.1. 농업분야 글로벌 경쟁력 기여

- 대규모 기업적 첨단농업을 통해 내수보다 수출지향적인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북아 농식품시장 선점효과에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기업의 대규모 첨단시설농업 진출에 대해 내수시장 경쟁과다를 걱정하는 기존 농업인들(경영체 포함)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격적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함.
  - \* 기존의 주어진 파이(시장)를 나누어 먹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파이(시장) 자체를 확장시키는 역할에 기여

- 농식품산업특구 첨단시설원예단지 진출기업이 동북아 농식품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농식품수출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국내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음.

### 3.4.2. 첨단유리온실 국산화 및 첨단 영농 전문인력 양성 기여

- 현재 네덜란드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유리온실용 과채류 종자 및 유리온실 건설사업을 국내기술로 대체할 수 있음.
  - 유리온실용 과채류 종자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국내종자시장의 규모가 작은 데 기인하므로, 향후 동북아 농식품시장을 겨냥해 재배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진출기업의 육종연구소와 인근지역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확대해야 함.
  - 유리온실에 사용되는 온실유리, 온실철골구조, 온실기초, 조명, 난방 등에서 국내 관련기업들을 통해 국산화를 시도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유관기업이 향후 네덜란드의 유리온실 설계 및 건설과정 등에 참여하여 시설기자재, 운영시스템 및 건설노하우를 습득할 경우 국산화 속도와 정도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임.
  - 또한 향후 유리온실 관련 설계, 자재, 시공, 운영에서 생긴 노하우는 현재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등 국내외 유리온실사업 진출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용 가능함.

### 3.4.3.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 경제효과

- 10ha의 첨단유리온실사업 운영시 앞서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손익자료 외에 481억 원을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988억 원과 868명의 고용유발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초기투자 생산유발효과: 481억원 × 2.055(2007년 기준 건설업 생산유발계수) = 988억원
  - 고용유발효과: 고용인원 60명(ha당 6명) + 투자고용인원 808명 (초기투

자비 481억원에 대해 2007년도 건설업 취업유발 계수 10억원당 16.8명  
적용) = 868명

- 인근지역의 주민들을 노동력으로 고용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하고,  
파프리카, 토마토 농가들의 해외수출시장 진출시 협력도 가능함.

## 제 5 장

### 농식품산업특구 제도의 법제화 방안

#### 1. 농식품산업특구 제도의 법제화 배경

##### 1.1. 국내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특수성: 새로운 추진 주체 및 법적 기반 필요

-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존의 개별적인 규모화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틀 안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사전 계획적이고, 집적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불가피함.
  - 기존 농식품산업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획기적인 지역·공간 개념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 기존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특구 제도는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업 육성 및 진흥 차원의 접근 필요

실용정부(MB 정부)의 지역정책은 광역화와 특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간 상생발전, 분권적 지역발전 등으로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의 균형발전 논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중(지역발전위원회, 2010)

- 그러나 현행 산업입지정책에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수립하여 고시토록 되어 있어, 산업별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움.

- 계획수립 및 변경시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상호이해의 한계와 행정적 비용 등으로 인해 비효율성 발생 가능성이 높음.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산업입지연구소, 2009).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의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 그러므로 산업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어 산업입지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관련 산업의 주무부서(농식품산업특구의 경우 농림수산물식품부)가 해당 산업의 입지정책에 대한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함.
- 산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주로 제조업 중심의 단지로서 특정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모든 유형의 산업단지를 포괄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음(산업입지연구소, 2009).
  - 특수목적의 단지는 개별법률에 따라 지정되는데, 산업법에 따른 산업단지와 중복적으로 지정되기도 함.
  - 특수목적의 단지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연구단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등이 있음.



표 5-1. 특수목적 단지와 근거법률

구분	지정목적	근거법률
과학연구단지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	과학기술기본법(제29조)
산업기술단지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 창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6조)
정보통신산업단지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기반시설의 지원	정보화촉진기본법(제21조)
문화산업단지	기업·대학·연구소·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기술훈련·정보교류·공동제작 등 지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4조)
물류단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 활성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4)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통해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활성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자료: 산업입지연구소(2009).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정책인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농공단지에 비해 농업과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농식품산업특구와는 목적과 성격(지정 방식 등)이 매우 상이함.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개발정책인 반면, 농식품산업특구는 산업(농식품 산업)활성화정책임.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자체 주도의 특성상 재정 지원 등에 한계가 존재하며, 농업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 제시 기능이 미약함.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구상하고 중앙정부(국가)가 각 특구에 선택적으로 규제특례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7대 과제 중 하나로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를 참고로 수립한 제도

\* 농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자체에는 “향토자원진흥특구”, “관광레포츠 특구”, “유통·물류 특구” 등이 농업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음(부록 표 참조).

\* '08년 10월 현재, 전국의 향토자원진흥특구는 43개, 관광레포츠 특구는 26개, 유통·물류 특구는 9개임

- 그러므로 농식품산업특구에 대해서도 농식품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산업 입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특별법 제정).

## 1.2. 농식품산업특구 추진방식 관련 제도적 장단점

### 1.2.1. 제 1안: 농식품산업특구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운영

- 농업의 산업적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산업특구 추진시 ‘(가칭)농식품산업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특구 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해 특구지정에서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개발절차를 명시하고 운영함.
  - 운영주체(지정 및 관리권자): 농림수산식품부
- 이유(장점):
  - 제도 운영시 농식품산업의 특수성 반영 유리
  - 기존 농업관련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달성 유리
  -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등의 방향성 제시 가능
- (단점): 새로운 법률 제정에 드는 행정비용

### 1.2.2. 제 2안: 기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법)’ 이용

- 기존의 산업단지의 지정에서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개발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여 농식품산업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함.
  - 운영주체: 지식경제부(지정권자), 국토해양부(관리권자)
- 이유(장점):
  - 기존법률을 이용하게 되어 새로운 법률 제정에 따른 행정비용 절약 효과
  - 제도운영시 과거 경험에 따른 프리미엄(운영의 숙련도 등) 효과
- (단점):
  - 제조업 중심의 법안으로 인해 농림수산업과의 괴리감 상존
  - 농림수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실효성 한계
  - 기존의 특수목적 단지에 대해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해 운영했던 과거 사례에 비추어 정부정책의 일관성 위배 가능성

### 1.2.3. 제 3안: 혼합방식= 농식품산업특구법 + 산업법

- 농식품산업특구법의 범위를 농수산물의 생산에 한정하고, 농수산물의 2차 가공에서 수출에 이르는 과정은 기존의 산업단지 지정 및 사후관리에 이용한 산업법을 활용함.
  - 농식품산업특구법은 농수산물 생산관련 지구 지정에 한정
  - 운영주체: 농림수산식품부(지정권자), 지식경제부(지정권자) 국토해양부(관리권자)
- 이유(장점): 각 제도의 주무부서간 갈등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약 효과
- (단점):
  - 이분화된 운영구조로 농림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 활용에 한계

- 농식품산업특구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 농식품산업특구의 실효성 의문

#### 1.2.4. 농식품산업특구 운영시 기존 산업단지(운영주체 등)와의 갈등 측면

- 기존의 산업법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지역특구법) 등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식품클러스터 등)나 지역특구(향토자원진흥특구 등)의 농식품산업특구 편입에 따른 갈등요소
- 기존 제도의 운영주체(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와 갈등 가능성
- 농식품산업특구 지정시 지정받지 못한 지역의 역차별에 대한 우려

### 1.3. 시사점

- 농식품산업분야의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인 ‘(가칭) 농식품산업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기존의 산업입지정책에서 특수목적 단지들에 대해 시행해 온 정부정책과 상응함.
- 농식품산업특구 추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주무부처(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 차원에서 더 바람직함.

## 2. 농식품산업특구 제도의 법제화 기본내용

### 2.1. 법안의 구성 및 내용

- ‘(가칭) 농식품산업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법안은 법률의 목적과 관련 용어의 정의 등을 명시한 ‘총칙’외에 ‘농식품산업특구의 조성’, ‘농식품산업특구의 관리 및 운영(특구관리공단 포함)’, ‘농식품산업특구 육

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sup>6</sup>을 포함해야 함.

- 농식품산업특구의 조성 부문에서는 특구종합계획 수립, 특구지정 및 특구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술
- 농식품산업특구의 관리 및 운영 부문에서는 관리기관 설립, 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술
- 농식품산업특구 육성을 위한 지원 부문에서는 특구 육성을 위해 조성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 관련 법안들에 대한 특례 및 인허가 등의 의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술

## 2.2. 농식품산업특구 조성

### 2.2.1. 종합계획 수립

-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산업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함.
  - 기본계획에는 농업특구 정책의 기본 방향, 특구조성 예정지 현황·전망, 지역별·유형별 조성계획, 농업특구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필요시 농식품산업특구의 지정·개발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
- 계획수립 및 변경시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식품산업특구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토록 조치함.

### 2.2.2. 특구지정

- 농식품산업특구사업을 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 부장관이 지정함.

<sup>6</sup>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참고.

- 농식품산업특구를 시행하려는 자는 농식품특구조성 사업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산업특구의 지정 및 고시, 지정취소, 지정방식 및 효력에 대한 사항 등 규정 필요
- 지정과정에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필요
- 농식품산업특구의 지정 및 취소, 조성계획 및 개발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식품산업특구 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 위원회에서는 농식품산업특구의 지정 및 취소, 조성계획 및 개발계획, 향후 평가 및 관계기관과의 의견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
  - 필요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2.2.3. 특구개발

- 농식품산업특구 조성사업 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등)는 ‘특구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획득이 필요함.
  -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사업시행자, 시행기간, 위치, 면적, 계획 평면도 및 설계도, 단계별 조성계획서, 조성토지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자금 계획서 등), 승인 효력 및 취소, 사업시행자의 요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사업시행자(지자체, 민간업체 등)가 원활히 특구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관련법안의 인·허가 의제사항 및 특례 조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정기적(1년 단위)으로 농식품산업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2.3. 농식품산업특구의 관리 및 운영

### 2.3.1.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지정

- 농식품산업특구의 관리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함.
- 향후 특구개발의 활성화 및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화된 공영기관을 설립하여 특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공단설립) 특구의 개발 및 관리와 입주업체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 농식품산업특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
    - \* 산업단지의 경우, 법률(산업집적법)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 명시
- 특구의 활성화, 개선방안, 지원정책 자문 등을 위해 ‘전국 농식품산업특구 입주업체 협의회’를 구성·운영함.
  - (협의회구성) 특구별 입주업체 대표, 연구기관·대학·공사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특구별로 관리기관(사업시행자, 관리공단 또는 입주업체협의회 등)을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업무별로 장관에게 보고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함.
  - 관리기관의 주요업무는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입주 안내 및 상담, 입주 계약체결, 입주자에 대한 관리, 지원시설 등의 관리·운영, 입주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지원 및 기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등

### 2.3.2. 특구관리 기본계획 및 운영 평가

- 관리기관은 특구별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기본계획에는 특구관리의 기본방향, 특구의 위치 및 면적, 특구 입주대상업종, 입주자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입주우선순위, 입주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지원 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

- 또한, 관리기관의 회계규정(예산과 결산), 입주계약 및 해지, 특구내 토지처분 제한 등 민감한 업무에 대한 명시된 규정이 필요함.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정기적(1년 단위)으로 농식품산업특구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2.4. 농식품산업특구 육성을 위한 지원 및 특례

### 2.4.1. 지원 및 특례의 목적과 지원체계

#### □ 특례 및 지원의 목적: 농식품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농식품산업특구제도의 기본 취지(농식품산업 활성화)를 보다 잘 성취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농식품산업특구의 지원 및 특례는 농식품산업(산업적 특수성)과 산업입지(공간적 특수성)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 창출의 유효유로 기능해야 함.

#### □ 지원 대상: 조성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 사업내용에 대한 지원

- 농식품산업특구 지원 및 특례는 크게 특구조성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과 특구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전략적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
  - 입주기업은 일반기업과 농업법인 모두 포괄
- (사업시행자)조성사업 시행자를 위해서는 개발비용 부담, 자금지원 등 개발비용분담 금융지원과 토지의 취득과 개발을 용이하도록 하는 토지개발을 지원함.
- (입주자)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부문별 특수성을 고려한 투자 지원, 세제·금융상의 지원과 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
- (사업내용)특구를 통해 추구하는 전략적인 사업과 관련된 지원



- 「(가칭)농식품산업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러한 지원제도 및 관련 제도적 편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2.4.2. 지원 및 특례의 범위와 내용

### □ 인·허가 등의 의제 지원

- 특구조성과 관련된 일련의 법률에 대한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함.
  - 초지법,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하천법, 도로법, 주택법 등
  - 이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법률들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부처와 협의 필요
- 농식품산업특구 조성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특구조성에 필요한 관련법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 시행계획이 고시된 때는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

### □ 사업 시행자를 위한 지원

- (조성사업 시행시 다른 법률과 관련된 특례 지원) 특구 조성시 토지 등과 관련된 다른 법률들에 대한 특례 및 필요한 조치들을 지원함.
  -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용 및 사용에 대한 지원
  - 매립지와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
  - 토지이용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에 대한 특례
  -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대한 특례

- 건설공사시에 발견되는 문화재와 관련된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특례
- 건설공사시에 발생하는 문제들(타인의 토지에의 침입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조치
- (시행사의 비용분담 및 금융지원) 특구 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 조성 및 관리·운영비에 대한 지원
  - 국가 보조금 운영과 관련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 특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지원(채권발행 등)
  - 조세 및 부담금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특례

#### □ 입주기업들을 위한 지원

- (경영 및 세제·금융 지원) 입주한 기업들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마케팅 포함)과 관련된 지원 및 세제·금융 부문을 지원함.
  - 정보제공, 경영지도, 수출지원, 창업지원, 인력확보 지원 등 입주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활동을 위한 지원(자금지원 등)
- (인프라 및 공동시설 지원) 공동 기반시설과 사업별로 필요한 개별 기반시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수행함.
  - 기반시설은 연약지반강화, 에너지공급시설, 정수시설, 환경시설 등을 포함
  - 공동시설은 APC, 공정육묘장, 경종기계장치 및 창고 등 포함
- (입주자 개별지원) 개별 입주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개별 지원을 수행함.
  - 개별지원에는 토지 임대료 감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확보(외국인 근로자 포함) 지원, 에너지 저가 공급 지원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시설 관련 자금의 금융지원 등을 포함

#### □ 특구내 연구개발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 전략적 사업에 대한 지원

- 농식품산업특구 사업내용 중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

- 교육시설 및 연구시설의 설립에 관한 특례
- 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 지원
- 외국인 투자의 보장 및 지원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의 특례
- 농식품산업의 수출 진흥
-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특례,
- 도매시장 개설 등 유통과 관련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것(농산물 원료로 하는 주류 등)과 관련하여 「주세법」에 관한 특례
- 종자사업과 관련하여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 농지위탁경영과 관련해 「농지법」에 관한 특례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 외국인 투자기업을 고려한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을 포함

### 3. 향후 과제

#### 3.1. 특구 진출기업·농업인·관련 전문가·정책담당자 간의 논의 심화

- 농식품산업특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농식품산업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논의를 심화시켜야 함.
  - 농식품산업특구에 진출하는 기업, 농업인, 관련전문가, 정책담당자(중앙, 지방)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및 조정 기간이 필요함.

### 3.2.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간 협의·조정

- ‘(가칭) 농식품산업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인·허가 의제처리된 법안들과 특례가 적용되는 법안들이 명시되어 있는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의 소관부처와 협의·조정 필요
  - 특히, 부처간 협의·조정시 기존의 특별법 또는 특례법에서 인·허가 의제처리된 법안들과 특례가 적용되는 법안들의 사례 활용 필요

### 3.3. 농식품산업특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줄여 농식품산업특구의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게 하려면 실행방안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조사 및 분석이 필요함.
  -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시행될 대규모 예산의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한 특구실효성 전략 연구 필요
  - 또한, 정부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과 농식품산업특구와의 연계성 강화 방안 강구 필요

## 제 6 장

### 요약 및 결론

#### 1. 요약

- 본 연구는 농식품산업특구가 무엇이며, 농식품산업분야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도입하려면 어떤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함.
- 농식품산업특구는 농식품산업이라는 산업적 특수성과 산업입지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결합한 개념으로 농식품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도입한 특별지구
- 우선, 국내외 산업입지 정책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산업입지 정책의 대표적인 형태인 산업단지 운영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현황도 살핌.
  -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산업과 관련성이 적고,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공단지 또한 지역적 연관성은 있으나 산업적 연관성은 매우 약함.
  -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되, 특수목적단지에 대해서는 개별법률을 제정하여 근거로 삼고 있음.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법적 근거로 삼고 있음.

- 농식품산업특구의 차별성은 기존의 산업단지의 제조업 중심이 아닌 농식품 산업 중심이라는 점과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달리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남.
- 농식품산업특구는 국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새로운 산업화 모델 구축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북아 농식품시장의 기회 활용 측면에서, 또한 국제 곡물 수급 불안에 따른 식량안보 대비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됨.
- 농식품산업특구의 유형으로는 간척지 중심의 집적형과 품목별 주산단지를 연결한 벨트형, 자원자원 중심의 자원관리형 특구가 있음.
-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계획적인 접근이 가능한 집적형 농식품산업특구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경제성 분석을 실시함.
- 집적형 농식품산업특구는 서해안 지역의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북아 농식품시장의 허브 역할을 기대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복합 영농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1차·2차·3차 산업을 융·복합한 컨버전스 농업의 실현, 저탄소 생태환경시스템을 이용하는 녹색성장기반 구축이라는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경제성 분석은 2,000ha 면적을 기준으로 농식품산업특구 조성에 투입되는 비용을 근거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유발효과를 계측함. 또한, 특구에 진출하는 기업(첨단유리온실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에 따른 수익성 분석과 시너지 효과를 분석함.
  - 조성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4조 4,732억 원 수준으로 사업비 대비 4.3 배 수준이며, 고용효과는 전산업분야에 걸쳐 29,461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계측됨.
  - 첨단유리온실 진출기업을 지원하여 육성할 경우 농업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부문이나 첨단유리온실의 국산화 및 전문인력 양성,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임.
- 농식품산업특구를 위한 특별법은 기존의 산업입지 근거 법률이 농식품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과 기존의 특수목적단지들이 개별 법

- 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로 삼고 있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을 제시함.
- 농식품산업특구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법안의 목적과 관련용어를 정의한 총칙 외에 농식품산업특구의 조성, 특구의 관리 및 운영, 특구 육성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농식품산업특구 조성부문에서는 특구종합계획수립, 특구지정 및 특구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농식품산업특구의 관리 및 운영 부문에서는 관리 기관 설립, 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농식품산업특구 육성을 위한 지원 부문에서는 특구 육성을 위해 조성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 관련 법안들에 대한 특례 및 인허가 등의 의제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명시적으로 기술

## 2. 결론

- 본 연구는 경쟁력이 약한 우리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북아 농식품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화모델을 찾고, 우리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농식품산업이라는 산업적 특수성과 산업입지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인 농식품산업특구의 타당성과 제도적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음.
- 농식품산업특구는 농식품산업과 관련된 1차·2차·3차 산업의 클러스터화를 통한 유기적인 연결로 시너지 효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특구조성에서부터 관리·운영에까지 필요한 부분들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는 계획입지임.
  - 농식품산업특구 조성시행자, 입주자 및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한국농식품산업공단’과 같은 특화된 공영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설립할 뿐 아니라, 입주업체들의 필요와 아이디어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국 농식품산업특구 입주업체

협의회'등을 구성·운영하여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의 사전달체계가 조화를 이루도록 구축하여 활용

- 기존의 특수목적단지들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되었던 것처럼, 농식품산업특구의 기본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운영되려면 농식품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한데,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농식품산업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이러한 특별법이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이루어져 농업인, 특구진출기업, 관련전문가, 정책관련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이외에도,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법안에 포함된 여러 인허가 의제 및 특례 관련 관계부처간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한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내 전담팀 신설도 필요함.
- 또한, 제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실행방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관련 시범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지속적인 전략연구가 필요함.



## 부 록 1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유형별 지정현황(2009.10. 현재)

유형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일
향토자원 진흥 (53개)	전북	고창군	고창 북분자산업특구	04.12.30
	경남	산청군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05.4.26
	경북	안동시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05.6.28
	경기	이천시	이천 도자산업특구	05.6.28
	충북	괴산군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05.6.28
	전북	남원시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05.9.6
	경남	함양군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05.9.6
	경북	상주시	상주 꽃감특구	05.9.6
	충북	옥천군	옥천 묘목산업특구	05.9.6
	경기	양평군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05.12.6
	충북	충주시	충주 사과특구	05.12.6
	충북	옥천군	옥천 옷산업특구	05.12.6
	충북	영동군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05.12.6
	경남	남해군	남해 귀향마을특구	06.2.28
	경남	하동군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06.2.28
	경북	김천시	김천 포도산업특구	06.2.28
	경북	문경시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06.6.20
	경북	울진군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06.6.20
	인천	강화군	강화 약쑥특구	06.6.20
	충남	논산시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06.6.20
	충북	음성군	음성 다울찬친환경수박특구	06.6.20
	울산	울주군	울주 연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06.9.12
	전남	장흥군	장흥진 장흥생약초·한방특구	06.9.12
	전북	부안군	부안 누에타운특구	06.9.12
	충남	청양군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06.9.12
	경북	김천시	김천 자두산업특구	06.12.19
	강원	원주시	원주 옷·한지산업특구	06.12.19
	경기	여주시	여주 쌀산업특구	06.12.19
	충남	논산시	논산 양촌꽃감특구	06.12.19
	경북	경산시	경산 종묘산업특구	07.4.20
	경북	영양군	영양 고추산업특구	07.4.20
	전북	김제시	김제 총채보리한우산업특구	07.4.20
	부산	기장군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07.4.20

유형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일	
	충북	영동군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07.4.20	
	경북	포항시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07.7.16	
	충남	논산시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07.7.16	
	경북	청도군	청도 반시나라특구	07.9.28	
	충남	예산군	예산 황토사과특구	07.9.28	
	전남	보성군	보성 녹차산업특구	07.9.28	
	충남	서천군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07.9.28	
	전남	광양시	광양 매실산업특구	08.4.25	
	전남	함평군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08.7.25	
	경북	칠곡군	칠곡 양봉산업특구	08.7.25	
	전남	신안군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08.12.19	
	경북	청송군	청송 사과특구	08.12.19	
	전남	순천시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08.12.19	
	충북	보은군	보은 대추·한우특구	08.12.19	
	제주	제주시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 특구	09.5.1	
	전남	영광군	영광 굴비산업특구	09.5.1	
	충남	부여군	부여 양송이특구	09.10.16	
		충남	서천군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09.10.16
		전남	완도군	완도 전복산업특구	09.10.16
경북		예천군	예천 곤충산업특구	09.10.16	
관광 레포츠 (32개)	전북	고창군	고창 경관농업특구	04.12.30	
	제주	남제주군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특구	04.12.3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05.2.2	
	전남	여수시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05.2.2	
	경북	영양군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05.4.26	
	전남	곡성군	곡성섬진강기차마을특구	05.6.28	
	강원	태백시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05.6.28	
	경남	의령군	의령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05.6.28	
	경북	영덕군	영덕 대게특구	05.12.6	
	전남	여수시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06.2.28	
	전남	함평군	함평 나비산업특구	06.6.20	
	전북	부안군	부안 영상문화특구	06.6.20	
	경기	연천군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	06.9.12	
	강원	화천군	화천 평화·생태특구	06.12.19	
	경남	고성군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07.4.20	
	인천	중구청	인천 중구차이나타운특구	07.4.20	
	충북	청주시	청주 직지문화특구	07.7.16	
	경북	봉화군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07.7.16	
	부산	동 구	부산동구 차이나타운지역발전특구	07.7.16	
	전남	장흥군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08.4.25	

유형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일
	충북	제천시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	08.4.25
	충북	충주시	충주 수상레포츠특구	08.4.25
	서울	강남구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08.7.25
	경기	양주시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08.7.25
	경북	고령군	고령 대가야농촌체험특구	08.7.25
	울산	남 구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08.7.25
	충남	서산시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08.12.19
	강원	영월군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08.12.19
	전남	강진군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09.5.1
	전남	고흥군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09.5.1
	경기	안산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09.5.1
	충북	증평군	증평 에듀팜특구	09.10.16
	교육 (18개)	전남	순천시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경남		창녕군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05.2.2
인천		서 구	인천서구 외국어교육특구	05.4.26
경기		군포시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05.12.6
경남		거창군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05.12.6
경남		김해시	김해 평생교육특구	05.12.6
전남		곡성군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06.2.28
전남		여수시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06.6.20
전남		강진군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06.12.19
경북		영주시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07.7.16
충남		아산시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07.9.28
서울		노원구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07.9.28
서울		중 구	서울중구 영어교육특구	07.9.28
전남		광양시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08.4.25
충남		천안시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08.4.25
경북		구미시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08.7.25
충남		홍성·예산군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08.12.19
전남		보성군	보성 영어평생교육특구	09.5.1
산업·연구 (13개)	강원	삼척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08.12.19
	전북	순창군	순창장류산업특구	04.12.30
	강원	원주시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05.4.26
	강원	강릉시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05.9.6
	대구	중 구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05.12.6
	충북	단양군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06.2.28
	경기	고양시	고양 화훼산업특구	06.6.20
	대구	북 구	대구 안경산업특구	06.9.12
	전북	부안군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07.4.20
경남	고성군	고성 조선산업특구	07.7.16	

유형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일
	경북	영덕군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07.9.28
	충남	태안군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07.9.28
	경남	거창군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07.9.28
유통·물류 (9개)	대구	중 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04.12.30
	충남	금산군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05.4.26
	충북	제천시	제천 약초웰빙특구	05.4.26
	서울	동대문구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05.6.28
	경북	영천시	영천 한방진흥특구	05.9.6
	전북	진안군	진안 홍삼한방특구	05.12.6
	경북	성주군	성주 참외산업특구	06.2.28
	경북	의성군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06.6.20
	경북	상주시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06.9.12
의료·복지 (4개)	전북	순창군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08.12.19
	전북	익산시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05.2.2
	강원	홍천군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	06.12.19
	전북	완주군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05.6.28

자료: 지역특화발전특구 연례보고서, 2009.

## 부 록 2

###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사례<sup>7</sup>

#### 1. 개요

- 2002년말 구조개혁특구법을 제정(당초 5년간 한시법이었으나 5년 연장)하여 「구조개혁특구제도」를 운영 중임.
  -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도모코자 특정지역을 한정하여 규제완화 또는 철폐 시행
  - 지자체와 민간기관도 구조개혁특구 제안이 가능(민간기관·NPO의 참여 유도)
  - 「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sup>8</sup>를 수상이 직접 지휘
  - 「구조개혁특별구역 기본방침」 지방재생 5원칙<sup>9</sup>에 의해 지역이 독자적인 노력을 추진

#### 2. 지정 및 전국화 절차

- 개인·민간사업자·자치단체로부터 특례조치 아이디어를 모집한 후, 이를 취토대로 광범위하게 수집된 규제완화 항목에 대해 내각관방에서 관계성·청과

<sup>7</sup> 지식경제부(2009)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연례보고서」 자료 활용.

<sup>8</sup> 최근('07.10.9) 지역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이와 관련된 4개 본부(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 도시재생본부, 지역재생본부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4개 사무국이 통합된 “지역활성화 통합 사무국”을 설치

<sup>9</sup> 지방재생 5원칙: 보완성, 자립, 공생, 종합성, 투명성

협약하여「특례조치 매뉴얼」을 공표함.

- 일반적 적용가능사항 : 전국적으로 완화조치
- 전국적 적용곤란사항 : 특구로 규제개혁조치
- 자치단체에서는「특례조치 매뉴얼」를 토대로 규제특례조치 항목을 선택하여 구조개혁특구개혁을 신청, 총리대신이 인정함.
  - 년 3회 기한설정 신청, 신청 전 1개월은 사전 컨설팅
  - 특구계획이 인정되면 특례조치에 의한 사업실시 가능
- 규제특례조치 포함사항은 1년 후 일괄 평가 실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전국수준으로 규제개혁을 확대(전국화)함.

### 3. 규제특례 특징

- 구조개혁특구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규제특례 조치내용을 특구법 개정을 통하여 신속히 시행·조치함.
- 특구계획의 관계부처 협의는 동의원칙 또는 조건부 동의로 용인하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명시함.
- 규제특례 조치에 대한 평가(년 1회)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전국 확대를 추진함.
  - '08년 현재 1,041개 구조개혁특구가 지정, 이 중 706개 특구를 전국화하고 6개는 지정 취소되어 329개의 특구를 운영 중
-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법에 의한 주요 규제특례(현행)는 다음과 같음.
  - 규제특례가 전국화 될 경우 관련규정을 삭제하므로 현재 시행 중인 특례의 숫자는 많지 않음.
  - 일본은 구조개혁특구 제도를 통해 623개 규제개혁을 실현하였음. 이 중 409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규제특례로서 특구에 적용된 것은 214개임. 214개의 규제특례 중 평가·조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72개는 위원회가 전국화하기로 결정하였고, 51개는 규제부서가 스스로 전국화함.

부표 2-1.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법에 의한 주요 규제특례

특례 조항	특례 내용
학교교육법	주식회사의 학교설치 가능, 비영리법인의 학교설치 가능
사립학교법	지방공공단체의 협력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부행위 인가 결정 요건심사 면제
의료법	주식회사의 병원 또는 진료소 개설 허가 가능, 주식회사 병원의 고도의료 제공, 광고 가능
주세법	특별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여 양조주 또는 탁주 제조·판매할 경우 최소 생산량 요건 적용을 배제
노인복지법	선정사업자(법인)의 특별양호 노인홈 설치 가능, 선정사업자인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간주
사회보험노무사법	사회보험노무사의 구직자 또는 노동자의 대리업무 가능

자료: 지식경제부(2009) 「지역특화발전특구 연례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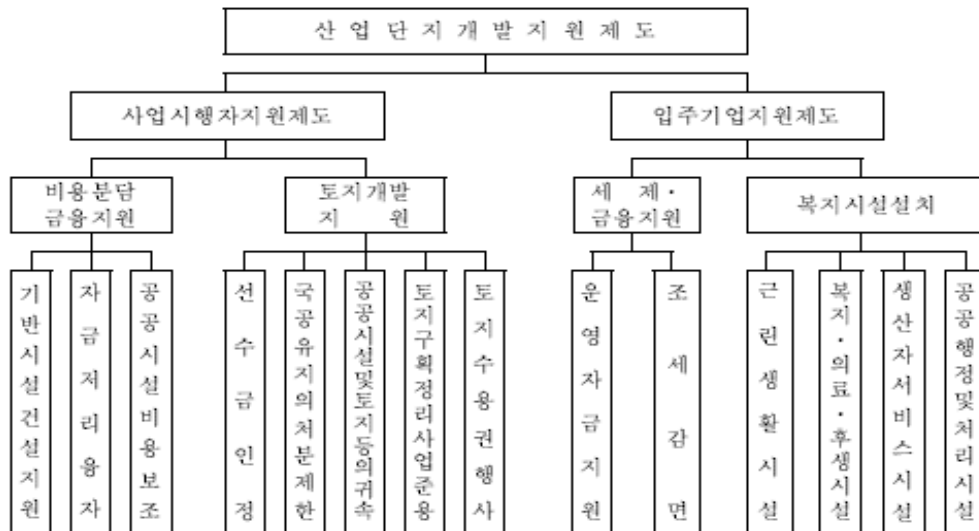
## 부 록 3

산업단지개발 지원제도<sup>10</sup>

## 1. 지원제도 체계의 이원화

- 지원체계는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원제도와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원제도는 비용분담 금융지원, 토지개발지원으로 구분
  -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는 세제·금융지원, 복지시설설치 지원으로 구분

부도 3-1. 산업단지 지원제도



자료: 산업입지연구소(2009).

<sup>10</sup> 산업입지연구소(2009)에서 발췌 정리.



## 2.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원제도

### 1) 비용부담(산업법 제28조, 영 제26조)

- (원칙) 개발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하여 회수
- 단지조성 여건이 열악하거나, 공공시설비용(진입도로, 단지내 도로, 용수시설, 하수도시설 등)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지원)
  - 보조 비율은 일괄적으로 50%이나, 일부(하수도 및 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문화재조사비, 등)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100% 지원

부표 3-1. 지원대상 및 비용보조율

지 원 대 상	비용보조율
산업단지내 간선도로 및 녹지시설 건설비	50%
용수공급시설 건설비	50%
이주대책 사업비	50%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50%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50%
아파트형 공장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50%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50%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100%
문화재조사비	100%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
사업시행자가 미개발·미분양된 산업단지내의 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100%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100%

주: \*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한함.  
 자료: 산업입지연구소(2009).

**2) 기반시설 우선 지원(산입법 제29조, 영 제27조)**

-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항만·도로·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 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국가, 지자체 및 공급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함.

<우선적으로 지원할 기반시설>

- 항만·도로 및 철도
-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 산업단지 공동구역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

**3) 조세 및 자금지원(산입법 제45조, 제46조)**

- 막대한 투자비의 이자부담과 자금압박을 막아주기 위해 장기저리로 자금지원
- 매입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 지방산업단지 및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

**4) 토지개발지원**

-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이 용이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장치 마련

부표 3-2. 토지개발에 따른 지원장치

구 분	내 용
토지수용 (산업법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li> <li>-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 도시첨단사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을 때 또는 농공단지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li> <li>-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음.</li> </u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산업법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봄.</li> <li>-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봄.</li> </u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특례 (산업법 제23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장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안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준공인가선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음.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산업법 제24조)	산업단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지식산업관련 시설·문화산업관련 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 시설·재활용산업관련 시설 또는 자원비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상업이 완료된 후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음.
토지에의 출입 등 (산업법 제25조)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음.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산업법 제26조)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됨.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산업법 제27조)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음.

자료: 산업입지연구소(2009).

### 3.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 1) 세제지원

-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장치 중 각종 세금 우대조치가 가장 일반적
  -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여 입주기업의 투자부담 경감 및 입주 유도

부표 3-3. 산업단지지원 관련 조세제도

구분	대상	지원대상	법률
산업단지 입주	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 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최초 입주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50% 감면(수도권의 지역 면제)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개발 시행자의 입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하는 경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신축 또는 증축할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50% 감면(수도권의 지역 면제)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수도권의 지역 면제)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50% 감면(수도권의 지역 면제)	지방세법 제276조
사업시행자가 분양·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재산세의 50% 감면(수도권의 지역 면제)	지방세법 제276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2009년말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차년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64조

자료: 산업입지연구소(2009).

2) 금융지원

- 국가기간산업,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사업, 첨단기술산업 등에 대한 관련개발법에 의한 금융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일반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비 저리 융자

부표 3-4. 국비보조 교부조건

		용도별	세부내용
부지조성		용지취득비	토지보상비, 지상물 보상비(공동이용시설용지 포함)
		단지시공비	정지토공, 사면보호, 집수탱크, 외곽울타리, 단지내 도로 · 수도관로, 단지내 하수시설, 공동이용시설(위락시설 등) · 단지내 구조물, 조경, 시공중 발생이자 등
	부대시설	진입도로	단지진입도로 편입토지의 용지매수비, 도로포장 및 구조물 등
		공동이용건축물	종사원 1,000명 당 330㎡ 이내
		전력, 통신, 용수기타시설	단지까지 전력인입, 통신관로, 단지의 용·배수시설, 가로 등 용수 개발(또는 상수도 인입), 용배수시설 이설 등
	기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문화재조사비	

3) 복지시설 설치지원

- 산업단지내 복지시설은 각 기업단위로 갖추어 것과 단지 전체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로 구분
  - 단지 전체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은 생산자서비스시설(공공행정기관 및 관리사무소, 은행 등), 후생시설(근로복지회관 등), 의료시설(병원 등),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식당 등) 등임.
- 복지시설 설치용지는 공공시설용지라 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고 무상으로 공급

부 록 4

유관법률 현황

항 목	경제자유구역법	자유무역지역법	산업집적활성법	대덕연구특구법	지역발전특구법	신산업지개발법	첨단의료단지법
지정권자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요청)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요청)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기반산업집적 지구외지정)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관련권자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장관
관리권 위 임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령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령 의거)	시·도지사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소속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관리기구	행정기구	자유무역위원회 출장소	산업단지관리공단	연구개발지원본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원기구
계획수립 변경·폐제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5년단위수립특시	지식경제부장관 5년단위수립특시	지식경제부장관 민간기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장관에게 신청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통보)	보건복지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년단위수립특시
심의위원회 (소속)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지식경제부)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지식경제부)	공상권관리위원회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지식경제부)	특구위원회 (지식경제부)	신산업지정핵심의회 (국토해양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국무총리실)
사업시행자	개발사업시행자			지식경제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시행가능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시행가능자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수용	수용가능			수용가능	수용가능	수용가능	

항 목	경제자유구역법	자유무역지역법	산업적활성법	대외연구구역법	지역발전특구법	산업입지개발법	첨단의료단지법
토지제공	매각	임대·매각	임대·매각	사용·수익 (50년초과지급)	매각	분양·임대·양도	임대·매각
지역구분	생산시설 물류시설 지원시설 기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주거구역 상업구역 농지구역 교육연구사업화 산업시설구역			
입주자격	수출중심제조업, 외인투자제조업수 출입도매업, 荷役물류업, 입주 업체지원업, 공공기관	임주개발사업 외국인투자유치목적	임주개발사업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자원비축시설 기타대통령령지정	첨단기술기업 정부출연연구소 공공연구기관 연구소기업 외투목적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임대·양도 차분제한	3년 이내 양도불허	10년 이내 차분제한	10년 이내 차분제한	지경부정관 사전승인필요	목적 외 용도 차분 불가	관리기관 사전승인	사용·수익 개시는 20년 이내
비용부담	임주기업체 (공동비용분)	사업수익자	사업수익자	정부출연공 기업연구개발비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조세면면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관세 범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융합도지세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관세 범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융합도지세	조세특례제한법 범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감면	외투기업 및 외국연구개발 세제지원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범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세법에 의거 구세 및 지방세 감면 가능	
외국인 투자지원	○	○	○	○	○	○	○
주민의견	×	×	×	○	○	○	×
자문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채권실행가능)	국가·지방자치단체 (채권실행가능)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감면)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반자금)

항 목	경제자유구역법	자유무역지역법	산업집적활성법	대덕연구특구법	지역발전특구법	산업입지개발법	첨단의료단지법
특 례	<p>국도계획 및 이용 체육시설설치이용 농지법 의료기관외부대사업 외국인전용카지노업허가 외국인전용의대주택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p>	<p>공장 등의 건축 수출의 승인</p>	<p>공장성립 등 산업기술평가지원 이화도흥공장의 설립관련 승인</p>	<p>세계지연 부담금감면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매각 등 공동연구촉진 공정거래법특례 산업단지 국도계획 및 이용</p>	<p>학교설립 지법전문인법 응용전문인법 교육전문인법 초·중·고교육법 출입국관리법 군사기비호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지법 산림지인용성법 산지관리법 국유림관리법 농수산물유통법 야생법 의료법 국도계획 및 이용 도로법 도시공원녹지법 산업입지개발법 공정거래법 국유·공유재산법 주세법 박물관미술관진흥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중지산업법 특허법 건축법 주택법 지방재정법 토지이용</p>	<p>도시첨단산업단지 준공산업단지개발 국도계획 및 이용 이전기업전용단지 재생사업지원 공정거래법도지정 주택공급 시립학교설립 학교교과과정운영 입대전용산업단지</p>	<p>공공우단지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출입국관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야생법 의료기기법 생물표본관리법 특허법</p>
법 칙	<p>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p>	<p>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p>	<p>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p>	<p>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p>	<p>6월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p>		



부 록 5

유관법률의 특례, 인·허가 및 지원 조항 비교

1. 특례 조항

특례 조항	산업법	산집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새만금법
공유수면 매립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지, 매립예정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의 매립목적은 관련 법률등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li> <li>-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목적이 변경된 경우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 양도</li> <li>-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li> <li>-사업시행자는 매립목적 변경을 위하여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해야 함</li> <li>-매립목적 변경 및 양도·양수를 받</li> </ul>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p>	<p>-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하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음</p>	<p>-건폐율·용적율 규제완화: 특구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토계획·이용법상의 용도지역안 건폐율·용적율 한도의 1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완화 적용 가능 -원화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특화사업에 직접 관련된 건축물인지 여부를 특구계획에 포함</p>	<p>은 자는 매립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p>
<p>환경정책 기본법</p>	<p>-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시 사전 환경성검토 필요</p>			
<p>행정지원 및 출연 등</p>		<p>-출연 및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단에 출연 및 보조 가능</p>		
<p>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 한 법률</p>	<p>-개발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는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도로, 녹지, 용수시설, 하수·도시설 등 공공시설과 이주대책 사업비, 임대용 산업단지, 농공단</p>			<p>-국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금 가능함</p>

<p>조세 및 부담금</p>	<p>-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산업단지 및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용자금 지원 -산업단지 개발시 부과되는 개발 부담금 등 부담금 면제(수도권 제외) -임주업체에 대한 국세, 지방세 감면 -농공단지 임주업체에 대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따라 별도 지원</p>	<p>-집적지구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 가능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채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 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채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p>		<p>1. 제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으나 전 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해당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
				<p>-「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채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용,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 가능</p>

<p>국유재산 법, 공유재 산 및 물 품 관리법</p>	<p>-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 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용 도폐지된 것으로 간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장등 영구 시설물의 추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산업단지안의 국유 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영구시 설물 추조 가능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목적외로 매각, 양도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익계약 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음</p>		<p>-국·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수 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매각 특례: 특화사업 에 필요한 토지는 특구계획에 정 하여진 목적외로 처분 불가 -국·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수 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특약 가능</p>	<p>-새만금사업지역 안의 국·공유 토 지 또는 건물 등을 5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 가능, 공장 등 영구 시설물 설치 가능, 임대 종료 시 국가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 반환</p>
<p>교육시설 및 연구 시설의 설립</p>	<p>-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사 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 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미리 교과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p>		<p>-사·군·구 설립 공립학교: 교육감 의 인가를 받아 기초자치단체는 시립·군립·구립학교 설립 가능 -설비·시설등 설립기준을 시도조 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교원의 배치기준등을 학교장이 정할 수 있음 -교사정원의 1/3를 산학겸임교사 로 대치 가능 -사·도·구립학교 교원의 신분: 초· 중·고-지방공무원 -특구장이 교장 및 교원 임용</p>	

<p>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외투법)</p>			<p>-제6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세계 및 자금지원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주택공급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외국방송의 재송신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등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p>
<p>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p>			<p>-관할 지자체장이 허가 없이 지방 도매시장 개설 가능</p>
<p>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p>			<p>-공동연구, 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p> <p>-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구의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주세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생산한 주류(농민주)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음</p>
<p>주세법</p>			<p>-종자업의 등록 특례: 종자업 영위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완화 -종자관리사 공동 고용 특례: 10인</p>

			이하의 종자업자가 공동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	
농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소유자는 특구 안에서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으며,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代)할 수 있음</li> <li>-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 시설 설치 가능</li> <li>-농지 전용 허가, 사용 후 복구를 조건으로 일시사용 허가</li> </ul>	
식품위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위생법」에도 불구하고 특구 안에서의 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li> <li>-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 가능</li> </ul>	
출입국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구장이 특화사업을 실시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발급추천서를 발부하도록 함</li> <li>-추천서 발부기준은 지경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li> <li>-체류기간 상한 특례 신청기간을 5년으로 연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구장이 특화사업을 실시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발급추천서를 발부하도록 함</li> <li>-추천서 발부기준은 지경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li> </ul>	
경제자유구역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경제부장관은 세만금사업지역 중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li> </ul>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가능
산지 관리법			-산지전용 허가준 특례 대통령령으로 국유림 및 보전산지 편입 비용을 달리 정함	새만금사업지역 인의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
건축법				새만금사업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가능, 민간투자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포함 가능
표시등등록심의회 심사 특례			-지리적 표시등록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토록 함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관련 특구내의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공업과 집유업은 특구장의 허가를 받으면 됨	

2. 인허가 의제

신입법		신집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새만금법	
관련법령	인·허가 사항	관련법령	인·허가 사항	관련법령	인·허가 사항	관련법령	인·허가 사항
초지법	제21조2 제23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초지전용허가	제23조 제4조 초지법 초지법	-초지전용허가	제23조 제4조 초지법	-초지전용허가	제15조 40 초지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초지전용 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제14조 제15조 산지 관리법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제14조 제15조 산지관리법 제5조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제86조 산지관리법	-새만금사업지역 인의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 가능
농지법	제31조 제34조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제31조 제35조제1항 제43조 제40조제1항 농지법	-농지전용의 신고 및 용도변경 승인 -농지의 전용허가	제86조 농지법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제15조 12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하천법	제6조 제25, 27조 제30조 제33조 제50조 -관리경과의 협의 또는 승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 계획의 변경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공 사실시계획의 인가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30조 제33조 하천법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의 점용허가	제33조 하천법	-하천의 점용허가	제15조 45 하천법	-관리경과의 협의, 승인 -하천의 점용허가
공유수면 매립법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매립면허 -고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협의 또는 승인	제8조 제17조 제28조 공유 수면 매립법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제5조 공유수면매 립법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제13조 공유수면 매립법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 -매립면허 권리 양도 가능 -매립목적 변경 및 양도·양수 받은 경우 매립지 소유권 취득해야 함 -협의, 승인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제29조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제29조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신고	제29조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신고



수도법	제17, 49조 제52, 54조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수도의 시	제15조 28	수도법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수도의 인가
전기사업법	제82조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15조 34	전기사업법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신고
공유수권 관리법	제5조 제8조	-공유수권의 점·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13조 제28조 제46조	공유수권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매립지의 매립목적은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목적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새민공사업지역의 매립 목적외 변경된 경우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 양도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매립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 -사업시행자는 매립목적 변경 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리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해야 함 -매립목적 변경 및 양도·양수를 받은 자는 매립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
도로법	제5조 제34조 제83조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제5조 13	도로법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허수도법	제16조 제2항 제2조	공공허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공공허수도의 점용허가	제15조 제4항	허수도법	제15조 제4항	공공허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공공허수도의 점용허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제8조 제20조 제34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20조 제34조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
시도법	제4조	-시도개설 허가	제4조	시도법	제15조 제13항	-시도 개설허가
시방사업법	제14조 제20조	-벌채 등의 허가 -시방지지정의 해제	제14조 제20조	시방사업법	제15조 제20항	-벌채 등의 허가 -시방지 지정의 해제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제14조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소하천점용의 허가		소하천정비법	제6조 제10조 제4조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골재취취법	제22조	-골재취취의 허가		골재취취법	제22조	-골재취취의 허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40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30조 제40조	국유재산법	제30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제20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사용·수익허가	제11조 제2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5조 제85조 제88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제56조 제88조 제118조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88조 제118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개발행위 심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계획의 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 제4조 제6조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제11조 제4조 제6조	건축법	제69조 제77조	-특별건축구역 지정 -지정 및 절차는 건축법 준용



지적법	제7조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산업 및 산촌 진흥추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산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항만법	제7조 제9조2항 제10조2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승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택지개발 촉진법	제8조 제9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3. 지원조항

지원조항	산업법	산집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세민군법
수용 및 사용	<p>-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수용 가능</p>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p>		<p>-토지 수용 가능 사업</p> <p>1.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p> <p>2. 교통, 환경, 유통·물류 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p> <p>3.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p> <p>4.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p> <p>5. 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사업</p>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p>	<p>-세민군 사업 시행을 위해 수용 또는 사용 가능</p>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p>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p>-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장장 도로, 임시 도로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음</p>
조성 및 관대·운영비의 지원 등	<p>○ 산업법 제28조, 영 제26조</p> <p>-개발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p> <p>-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는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도로, 녹지, 용수시설, 하수도시설 등 공공시설과 이주대책 사업비, 임대용 산업단지,</p>			<p>-농식품부장관은 세민군사업지역의 농업 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음.</p> <p>1. 세민군사업지역 안에서 농림수산물 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지·건물 등의 임대료</p> <p>2. 제3조제항에 따른 매립면허로 인한</p>

	<p>농공단지의 경우는 용지매입비까지 포 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50%이나 경우에 따라 10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함</li> </ul>			<p>권리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p> <p>3. 제40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p> <p>-위의 수입금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p> <p>-유지관리제원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가능</p>
<p>채권의 발행</p>		<p>-공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 발행 가능</p> <p>-채권의 발행액은 공단의 자본금과 적 립금을 합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함</p> <p>-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 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p> <p>-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 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함</p>		
<p>입주자에 대한 지원</p>	<p>-입주업체에 대한 금융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간산업,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사 업, 첨단기술산업 등에 대한 관련 개발 법에 의한 금융지원</li> <li>●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지원</li> <l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li> </ul>	<p>-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 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수행 가능</p> <p>-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 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 요한 지도 가능</p>		<p>-세민군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 및 지방세 감면</p> <p>-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사업을 유치 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 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 면,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각종 외 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 가능.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비 저리 융자 등</li> </ul>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가능</p>
<p>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 지원</p>		<p>-산업입지연구센터 설치: 국내의 산업 입지 현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기업의 산업입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완·주소 연구 및 자문 제공</p>		
<p>외국인투자자의 보장 및 지원</p>		<p>-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안·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안·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2.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각종 신고 및 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3. 「건축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p>		

## 부 록 6

# 농식품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식품특구의 조성·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첨단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식품특구”란 농어업 및 식품산업(이하 “농식품산업”이라 한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연구 및 교육시설 등을 조성·설치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3. “식품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4. “농식품특구조성사업”이란 농식품특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식품산업을 위한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의 조성사업
  - 나.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교육단지의 조성사업
  - 다. 농어촌 체험·관광·휴양단지의 조성사업
  - 라. 농식품특구의 효율증진을 위한 주거시설·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체육시설·지원시설의 설치사업



- 마. 용·배수시설(상·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치사업
  - 바. 항만·도로·철도 설치사업
  - 사. 전기·통신·가스·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설치사업
  - 아. 폐기물처리·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입주자”란 농식품특구에 입주하여 농식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가. 생산·가공·저장·유통사업
  - 나. 연구·교육사업
  - 다. 농어촌 체험·관광·휴양사업
  - 라.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식품특구 및 농식품특구조성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이 법에 따른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농식품특구의 조성

**제4조(농식품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특구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농식품특구의 지정·개발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식품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농식품특구 육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2. 농식품특구 조성 예정지 현황 및 전망
3. 지역별·유형별 농식품특구 조성 및 지원 계획
4. 그 밖에 농식품특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농식품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제3항에 따른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농식품특구의 지정·고시 등)** ① 농식품특구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농식품특구조성사업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식품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식품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농식품특구의 지정목적
3. 사업시행자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5. 추정사업비 수입·지출예산서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사업추진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농식품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농식품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농식품특구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등에게 제4항에 따른 고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조(농식품특구의 지정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식품특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식품특구조성사업의 진도가 개발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제7호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장래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특별히 개발되는 구역·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농식품특구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6. 그 밖에 농식품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더 이상 농식품특구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농식품특구위원회)** ① 농식품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식품특구위원회를 둔다.

1. 종합계획(변경을 포함한다)
  2. 개발계획(변경을 포함한다)
  3. 농식품특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5. 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의견조정
  6. 특구운영의 평가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농식품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농식품특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농식품특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농식품특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농식품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농식품특구 지정의 효과)** 제5조에 따라 농식품특구가 지정·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승인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수립·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6.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0조(행위제한 등)** ① 농식품특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농식품특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

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11조(농식품특구조성사업의 시행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특구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2. 시·도지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자가 농식품특구조성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7.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

② 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시·도지사는 농식품특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식품특구조성사업의 시행자나 수탁시행자는 「주택법」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마치거나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농식품특구조성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식품특구조성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기간, 목적 및 위치·면적
3. 사업대상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4.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5.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7.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농식품특구 지정 등의 실효)** ① 제5조에 따른 농식품특구의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농식품특구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승인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시행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농식품특구에 대하여 그 시행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농식품특구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④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취소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행계획의 승인취소 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농식품특구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승

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중단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석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4.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



- 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인가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0.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등(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3.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19.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 개장허가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8.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
  29.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30.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3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
  3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3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3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시행계획을 제12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 등 의제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생략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그 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면허세 등은 면제한다.

**제16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농식품특구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② 수용의 대상이 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발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 제12조에 따라 시행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지, 매립예정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매립목적은 같은 법 제2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에 관한 특례)**

농식품특구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및「농지법」제32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에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농식품특구조성사업에 대하여는「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법」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문화재보호법」에 관한 특례)**

- ① 농식품특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② 농식품특구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중 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농식품특구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그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안으로 한다.
- ④ 330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식품특구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① 사업시행자는 농식품특구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21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농식품특구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농식품특구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조성 토지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농식품특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에 따라 임대(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4조에 따른 농식품특구 관리기관에 조성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하는 조성토지 등의 용도, 임대 또는 매각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공시설의 귀속)** 사업시행자가 농식품특구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로 본다.

### 제3장 농식품특구의 관리 및 운영

**제24조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등)** ① 농식품특구의 관리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며, 농식품특구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농식품특구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2. 농식품특구관리공단
  3. 제62조의 농식품특구입주자협의회
- ② 관리기관은 농식품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5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식품특구 입주안내 및 상담
  3. 제26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4. 입주자에 대한 관리
  5. 지원시설 등의 관리·운영
  6. 입주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지원
  7.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는 업무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은 농식품특구의 도로,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농림수산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징수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④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식품특구의 조성용지 및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  
을 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2조에  
따른 농식품특구입주자협의회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관리기본계획)** ①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  
특구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1조제2  
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공고 시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에 포  
함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식품특구의 면적
2. 입주대상업종
3. 입주자의 자격·선정방법 및 입주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
4. 농식품특구 발전계획
5. 생산·수출 및 고용전망
6.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전망
7. 지원시설 등의 관리·운영계획
8. 입주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계획 그 밖에 농식품특구의 관리·운영에 필  
요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입주계약 등)** ①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라 농식품특구에 입주하려는 자는 업종, 입주위치 등 입주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농식품특구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농식품특구의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분양받은 토지를 처분하거나 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토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시설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자의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입주자로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입주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후에 그 소유 토지나 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입주자의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매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28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설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 등의 준공이나 사업의 착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26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5. 제27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
6. 그 밖에 입주계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예산과 결산)** ①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④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

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이익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행정지원 및 출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 또는 용자 할 수 있다.

#### 제4장 농식품특구관리공단

**제32조(농식품특구관리공단의 설립 등)** ① 제24조에 따른 농식품특구관리공단(이하 “특구관리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특구관리공단이 아닌 자는 농식품특구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특구관리공단은 제24조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정관)** ① 특구관리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특구관리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이사회)** ① 특구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특구관리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5조(임원)** ① 특구관리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10명 이내(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미만으로 한다)
3. 감사 1명(비상임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이사를 둘 수 있다.
- ③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6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특구관리공단을 대표하고, 특구관리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이사장은 특구관리공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특구관리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감사는 특구관리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37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①특구관리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특구관리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 ②제1항의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리공단을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제38조(겸직제한)** ①특구관리공단의 이사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특구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특구관리공단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민법」의 준용)** 특구관리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특구관리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장 농식품특구 육성을 위한 지원

**제42조(구성 및 관리·운영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특구의 구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식품특구구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항만·도로·철도 및 용·배수시설 : 농식품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통신·가스·집단에너지공급시설 : 농식품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 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농식품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1조에 의한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식품특구조성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농식품특구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이율, 상환기간, 발행의 방법·절차, 매입자 및 발행조건, 그 밖에 사무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특구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농식품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입주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등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특구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6.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7.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1.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2.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제46조(입주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식품특구 입주안내 및 상담
2. 정보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3. 경영자에 대한 경영연수 및 국내외 연수
4. 수출지원 및 기업체와의 판매계열화 알선
5. 우수 농식품 생산업체의 판로확대를 위한 직거래 알선
6.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확보 지원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에 대하여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주택·의료시설·학교·연구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특구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농식품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외국인근로자도입계획의 공표 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의 한도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입주자를 위하여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7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및 입주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48조(교육시설 및 연구시설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은 농식품특구의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시설 및 연구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에 교육시설 또는 연구시설 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및 연구시설의 설립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



는 교육시설 및 연구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특구 내에 입주하는 교육시설 및 연구시설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과 임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9조(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 지원)** ①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은 농식품특구에 있는 교육시설 및 연구시설에 대하여 전문연구개발인력 및 사업화지원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구의 교육시설 및 연구시설과 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시설 및 연구시설과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2. 교육시설에 대한 창업과정의 개설 및 운영 지원
3. 연구개발지원 전문인력 및 경영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4. 연구 및 기술인력의 교류활성화 및 산업현장교육 내실화 지원
5. 연구장비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기관에 대한 인력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6. 연구인력·연구과제·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7. 그 밖에 교육시설 및 연구시설과 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50조(외국인투자의 보장 및 지원)** ① 농식품특구 내에서 투자하는 외국인

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제한사항 이외에는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등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및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7조제4항에 따른 감면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1조(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의 특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도 불구하고 농식품특구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 투자지역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2조(농식품산업의 수출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가 생산한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3조(자유무역지역 지정의 특례)** 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특구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농식품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불구하고 농식품특구 내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54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식품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는 농식품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55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농식품특구 내에서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제4조에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56조(「주세법」에 관한 특례)** 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농식품특구의 농업인·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주세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농민주"라 한다)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농민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① 농식품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농식품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1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다.

**제58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 농지소유자는 농식품특구 내에서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농식품특구 내에서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제59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식품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식품특구 내에서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농식품특구 내에서의 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농식품특구 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61조(농식품특구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특구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식품특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식품특구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농식품특구의 조성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식품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기획
  2.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농식품특구위원회의 의안작성 등 운영 보좌
  4. 개발계획의 협의·조정 에 관한 사항
  5. 농식품특구 투자유치 촉진 지원 및 홍보·대외협력
  6.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농식품특구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농식품특구입주자협의회)** ① 입주자는 농식품특구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자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협회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관리권자는 입주자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입주자협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농식품특구의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년 마다 농식품특구조성사업 및 농식품특구의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농식품특구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평가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또는 건축이나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농식품특구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농식품특구를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범위·방법 및 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1제1항에 따른 농식품특구의 지정취소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취소
3. 제62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 설립인가의 취소

**제66조(관계서류 등의 열람)** ① 사업시행자는 농식품특구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7조(보고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특구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장 벌칙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특구 지정을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식품특구에서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5.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6.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식품특구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게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8. 제28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입주자.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제외한다.
9. 제28조제2항에 위반하여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입주자
10. 제32조제2항에 위반하여 농식품특구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7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제2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참고 문헌

- 김병률 외. 2009. 「농어업·농어촌 미래전략과제 정책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외. 2008.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 개편방안(1/2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박문호, 김태연. 2004.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식품부. 2007. 「(사례연구를 통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방향」.
- 농림수산식품부. 2004.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자율성 강화 및 농업 클러스터 추진방안」.
- 농림수산식품부. 2010.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 류승한. 2010. 「산업입지정책과 농식품산업」. 농식품부 세미나 자료.
- 박석두 외. 2009.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재 외. 2010. 「2020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산업입지연구소. 2009. 「2010년도 산업입지요람」. 한국산업단지공단.
- 삼성경제연구소. 2002. 「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2002. 「산업클러스터의 국내외 사례와 발전전략」. 「CEO Information」.
- 신용광 외. 2008. 「화용간척지 발조성 사업의 경제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동환 외. 2009.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의 지역별·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농촌경제 제 32권 제5호.
- 오내원 외. 2008. 「새만금 농업지역 개발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세익 외. 2007.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윤구 외. 2005. 「Green Bio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외. 2009. 「경제·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경제 활성화 방안(1/2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항구 외. 2008.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기본계획 수립」. 산업연구원.
- 정은미 외. 2008. 「프리카 산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지식경제부. 2008 「지역특화발전특구 연례보고서」.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 허승욱 외. 2009 「6차 산업형 수출전문 최첨단 유리온실 조성 사업타당성 분석」. 단국대학교.
- Miler, R.E. and P.D. Blair, 1985.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Prentice-Hall.



---

## C2011-4

### 농식품산업특구 제도의 법제화 방안 및 타당성 연구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0. 12.  
발 행 2010. 12.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19-1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E-mail: [cree1775@hanmail.net](mailto:cree1775@hanmail.net)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